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 도민 중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
201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 목 차 •

제1부 제주도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제1장 계획의 배경과 요건

1. 계획의 중요성	1
2. 계획의 주요 환경 분석	4
3. 계획의 시사점	15

제2장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17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19
3.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27

제2부 2014년 영역별 시행계획

제1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31
제2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61
제3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96
제4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124

부 록

<부록 1> 평생교육법	168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186

제 1 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 제 1 장 계획의 배경과 요건
 - 제 2 장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

제 1 장 계획의 배경과 요건

1. 계획의 필요성

1-1.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으로서 평생학습정책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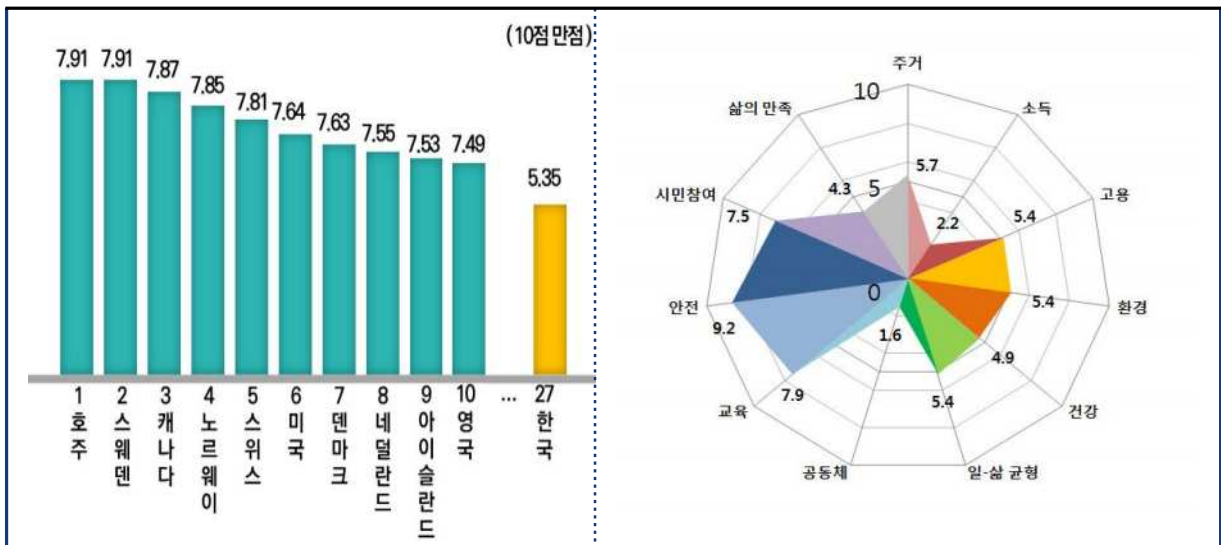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지식의 생명주기 단축으로 인하여 종래의 “학교교육 중심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즉, 일터는 “학습조직”을, 지방정부는 “학습도시”를, 사회는 “학습사회”를, 경제는 “학습경제”를, 문화는 “학습문화”를, 그리고 국가는 “학습강국”의 건설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등 사회 각 부문이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 환경의 보전 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에서부터 주민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은 단순히 생태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이 생동감과 활력화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지속성을 뜻함. 결국 평생학습 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 시스템 및 지식사회형 사회적 체계와 직결되고 있음
 - ▶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창조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로의 전환
 - ▶ 인구패러다임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도시화 사회
 -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 사회통합형 국가전략으로서 평생학습 강조
 - ▶ 글로벌(Global) 패러다임의 변화 : 글로벌(Global)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 직업과 생활 현장에서 계속되는 평생교육의 강화
- 따라서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국가적, 지역적으로는 국민의 지식·정보공유, 지식격차의 완화 및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함

1-2. ‘국민행복’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의 평생학습

- 국민행복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100세 시대 사회 번영을 이끄는 중요 요소로 국내총생산(GDP)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국민행복지수로 국가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
-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되면서(UN), 행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간된 『2013세계행복보고서(UN)』에 따르면 세계 평균 행복도는 5.158점이며, 한국은 행복지수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총 6.267점을 얻어 156개 국가 중 41위로 조사되었고,¹⁾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5계단 상승한 것임

- 따라서 평생학습은 국가 경제력과 함께 사회적 신뢰, 직업의 질과 선택의 자유, 정치참여 등 **행복도의 영향요인의 주요 요소에 작용하고 있는 기제(메카니즘)**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음**



[그림 1] 주요 국가별 행복지수 및 우리나라 삶의 영역별 행복 정도('13년, OECD)

※ 주 : 삶의 영역별 행복도는 다음과 같은 지표로 측정

주거 : 1인당 방 수, 주거 비용, 기본 하수 시설 / 소득 : 가계 가처분 소득, 가구당 금융자산

고용 : 취업률, 장기 실업률, 개인 소득, 직업 안정성 / 공동체 : 지원 네트워크 질

교육 : 학력, 교육연한, 수학·읽기·과학 분야 학생 수준 / 환경 : 대기 오염, 수질

시민 참여 : 투표율,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협의 / 건강 : 기대수명, 개인의 건강 관련 인식

삶의 만족 : 삶에 대한 만족도 / 안전 : 살인사건 비율, 폭력사건 비율

일-삶 균형 : 장기간 노동하는 근로자 비율, 여가 및 개인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1-3. 창조경제 조성을 위한 성인 학습자 역량개발 서비스 강화

- 지식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평생직업 확산에 따라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평생학습을 통해 소외계층,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재직자, 근로자, 은퇴자 등)도 주요 정책 대상으로 부상

1) 2013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3)는 2010~2012년까지 세계 150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실제 GDP, 건강 수명, 다른사람에게 의지할 필요성,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부패로부터 자유, 관용 등 6가지 항목을 토대로 조사해서 발표하였음.

하면서 선진국들은 우수 노동력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 진흥을 **주요한 국가전략**으로 채택함

- ▶ 독일(Federal Government Qualification Initiative - EAEA, 2011), 일본 (Basic Promotion Plan for Education - AKIHIRO OGAWA, 2009) 등
- ▶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되며, G7국가와의 격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음²⁾

[표 2]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학습 패러다임 변화

구 분		학 력 중 심 사 회	능 력 중 심 사 회
경제환경	산 업 구 조	제조업(중화학공업) 중심	소프트화 정보서비스산업 중심
	직 무 내 용	단순 반복	복잡화·세분화·전문화
	수 요 인 력	단순기능인력	기초직업능력 다기능화·전문화
	노동시장 채용관행	종신고용 정시 채용제	노동시장 유연화로 수시 채용
사회교육 환 경	학 력 변 화	저학력	고학력
	개 인 능 력 표 시	학력	학력 + 자격
	사 회 교 육	학력중심사회(정규교육 위주)	능력중심사회(평생학습의 중요성)
	훈 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1-4. 100세 시대 인생 후반기 교육 체제 **구축** 및 인프라 확충 필요

○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은퇴 또는 정년 이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강화와 함께 인생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노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추이에 따른 100세 장수**의** 보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 학령기 중심 인생설계(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벗어나 고용시장 중심 사회로 총체적 재구조화(**restructuralization**)를 요청받고 있음

- ▶ 우리나라 고령자(55~64세)**의** 고용율(62.1%)은 OECD 평균(54.4%, OECD factbook, 2013)보다 높은 편이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위, ”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 531호, 2013. 3. 22)

1-5. 사회 갈등구조 해소를 넘어 상생협력의 매개체로서 평생학습

- 평생학습은 21세기 지역, 국가, 네트워크 사회의 ‘범용(汎用)’ 교육시스템 모델인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잃어버린 교육력’(lost education funderment)을 복원하자는 지역사회 교육의 부활 성격을 지님. 현대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가 발전과 교류의 주체임. 따라서 ‘공동체(community)’를 복원하고 재생시켜 나가야 하며 이 때 학습을 통해 공동가치를 **일구어** 나가야 함
 -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의 심화로** ‘넘비 공화국’으로 경제적 손실 연간 246조원,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로 보고(박준,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8. 21)
 - ▶ OECD, World Bank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도구로서 평생학습 강조
 - ▶ EU, ASEM : 국가 수준의 경제블록에 상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력할 것을 권고

2. 계획의 주요 환경 분석

2-1. 평생교육 제도의 변화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제도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을 기초로 하여, 1999년에 공포한 「평생교육법」³⁾을 토대로 진행되다가, 2007년 12월에 개정된 법률⁴⁾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평생교육 관련제도의 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교육문명으로서 평생학습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평생학습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법**」을 제정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추구하는 교육복지국가(Eduutopia)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학습강국, 인재 대국의 국정가치를 구현
 -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비를 통해** 평생교육 진흥 및 평가인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추진 도모 및 기존의 「평생교육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 개정

3)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기회균등 및 자율성 보장, 평생교육의 중립성 그리고 평생교육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내용으로는 유·무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강사정보은행제·교육계좌제, 사내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및 배치와 평생교육시설 등을 통해서 학점 등의 인정, 청문, 권한 위임,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4)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 자격조건 및 배치기준 강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책무 및 요건, 전문대학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력인정 그리고 학점 등의 인정, 행정처분, 청문, 권한위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2008년에 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와 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평생교육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신설된 제도의 확산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광역단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등 지원 추진체제 개편 및 각종 관련법의 연계 및 연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11개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였음(2014년 1월 말 기준)



[그림 1] 평생교육법 개정의 배경

○ 평생교육법 연혁

제5공화국 헌법 (1980.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회 제5항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조항’ 명시 ▪ 제29조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규정
사회교육법 (198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 12. 12 구용현의원외 56인 발의로 법안 제출 ▪ 1982. 11. 26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통과 ▪ 1982. 12. 15 제114회 국회 본회의 통과 ▪ 1982. 12. 31 법률 제3648호 공포
사회교육법 전부개정 평생교육법 (1999.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11. 26 정부안 확정, 국회에 법안 제출 ▪ 1999. 08. 10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 1999. 08. 12 제206회 국회 본회의 통과 ▪ 1999. 08. 31 법률 제6003호로 공포('00. 3. 1 시행) 법명변경(사회교육법 → 평생교육법)

<p>평생교육법 전부개정 (2007. 12.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02. 21 전부개정 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2007. 04. 09 전부개정 법률안(임해규의원 대표발의) ▪ 2007. 04. 18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 2007. 11. 16 국회 교육위원회 확정 의결 통과 ▪ 2007. 11. 21 국회 법사위원회 의결 통과 ▪ 2007. 11. 22 국회 본회의 의결 통과 ▪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공포('08. 2. 15 시행)
<p>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제정 및 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3. 18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 2011. 1. 1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 2011. 3. 31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 2011. 8. 17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 행정시 평생학습관 설치 근거 등 마련 ▪ 2012. 12. 12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그림 2] 평생교육법의 개념도

2-2. 평생교육 관련 계획의 변화

- 『제1차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2~2006)』의 종료와 제1차 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에 이어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2013. 9월)을 수립하였음

-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그동안 지방교육청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수립으로 변경되었음
-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 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① 창조학습을 주도하는 국민, ②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 ③ 함께 학습하는 지역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는 크게 4가지로 접근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로는 다음과 같음

영역	추진 과제	세부 추진 과제
1. 대학 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	1-1.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①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 체제 구축 ②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확대
	1-2.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① 지역공헌형 열린 대학 활성화 ②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
	1-3.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인정 확대 ②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통한 학력- 교육훈련 - 자격 연계
2.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제 구축	2-1.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①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 ② 오프라인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2-2.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①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 ② 기초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기반 강화 ③ 광역자치단체 수준 평생교육 추진체제 마련
	2-3.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①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 실시 ②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③ 평생교육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3.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1.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② 중소기업인 생애경력 개발 지원 ③ 기업맞춤형 학습참여 기반 마련
	3-2.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① 국민 문해역량 지원 강화 ②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③ 저소득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3-3.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① 경력단절 여성의 재도약 학습 지원 ② 군 경험의 사회적 인정 및 교육기회 확대 ③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계속학습 지원
4.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4-1.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① 학교평생교육과 지역공동체 연계 ②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
	4-2. 지역주민의 인문역량 시민역량 강화	① 지역기반 인문학 지원 강화 ②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역량 지원
	4-3.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①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②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 개발 및 확산

2-3. 평생학습 추진체제 변화

(1)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 중앙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요 평생교육 정책들의 계획 수립 및 추진

[표 3] 국가단위 평생학습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 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학습 및 직업교육 정책을 총괄 ○ 국가 평생교육 계획 수립,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평생교육제도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기반조성, 평생교육기관 지원 등의 업무 수행 	
국가 평생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2008년에 설립 ○ 국가 단위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집행,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학습 결과의 인정, 평생학습계좌제, 학점 은행제, 독학학위제 운영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기능을 수행 	

(2) 광역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 광역단위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시도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나,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 특히 지방평생교육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청의 협의 의무를 둬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표 4] 광역단위 지방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분	시·군·구청	시·도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시행(제11조) -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의 수립·시행에 협의(제11조)
행정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 요구(제13조) - 평생교육통계조사(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또는 등록 관리(제28조~제38조) - 평생교육시설 설치 인가 또는 등록 취소(제42조)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구성·운영(제12조) - 시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장(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위원 구성 협의(제12조) - 부교육감은 당연직 부의장(제12조)

구분	시·군·구청	시·도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기관 지도 및 지원	- 기관 요청 시 평생교육 활동 지도 또는 지원(제17조)	
평생교육사업 추진기구 운영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20조) · 평생교육 기획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기타 필요사항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부칙 경과조치)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 평생교육 정보수집·제공 · 평생학습 상담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연계체제 구축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협의(「시행령」 제12조)
평생교육진흥 사업 내용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제16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제16조) -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시행령」 제13조)	- 좌동 - 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협의(제16조)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2~2013 평생교육백서」

[표 5] 광역단위 평생학습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고
시·도 교육청	○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업무로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문자해득교육,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운영 등이 있음 -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교육감의 직접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로서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단, 대학 소속 시설은 제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사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의 시설에 대해서 교육감은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 - 교육청이 직접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진흥 사업으로는 문자해득교육이 있음 - 현행법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운영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 고
<p>시·도 평생교육 협의회</p>	<p>○ 광역시·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장과 도지사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평생교육법」 제12조)</p>	
<p>시·도 평생교육 진흥원</p>	<p>○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평생교육법」 제20조)</p> <p>-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p> <p>- 제20조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및 설치 현황</p> <p>-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있는 곳은 11개 시도이며, 6개 시도는 검토 중임</p> <p>-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유형도 독립법인 유형, 지정 위탁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p> <p>* 재단법인 유형 : 대전('11.7), 경기('11.12)(2개 시·도)</p> <p>* 지정 운영 유형 : 부산('11.3), 충북('11.4), 충남('12.1), 대구('12.5), 울산('12.7), 제주('12.7), 인천('13.5), 광주('13.7), 경북('13.7) (9개 시·도)</p> <p>* 미운영 : 서울,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세종(6개 시·도)</p>	

(3) 기초단위 평생교육 추진체제

[표 6] 기초자치단체 평생학습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비 고
시·군·구 평생교육 협의회	○ 시·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구 평생교육 협의회를 설치·운영(「평생교육법」 제14조)	
시·군·구 평생 학습관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촉진 하기 위한 시·군·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상 시·도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2012년 기준) 평생학습관은 395개의 기관 운영 중

[표 7] 기초단위 지방평생교육 추진체제

구분	시·군·구청	시·도 및 지역교육청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 협의회 구성·운영(제14조) - 시·군·구 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장 (제14조)	-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 가능(제14조)
평생학습도시	-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및 사업운영 (제15조)	
평생교육기관 지도 및 지원	- 기관 요청시 평생교육활동 지도 또는 지원(제17조)	
시·군·구 평생 학습관	- 조례제정 후 설치 또는 운영(제21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제공	- 시·도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제21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 기회 제공
평생교육진흥 사업내용	- 평생교육진흥사업 실시 또는 지원 (제16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조례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수행(제16조)	- 좌동 - 시·도청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협의(제16조)
평생교육 진흥 사업 영역	- 법이 규정한 모든 평생교육 사업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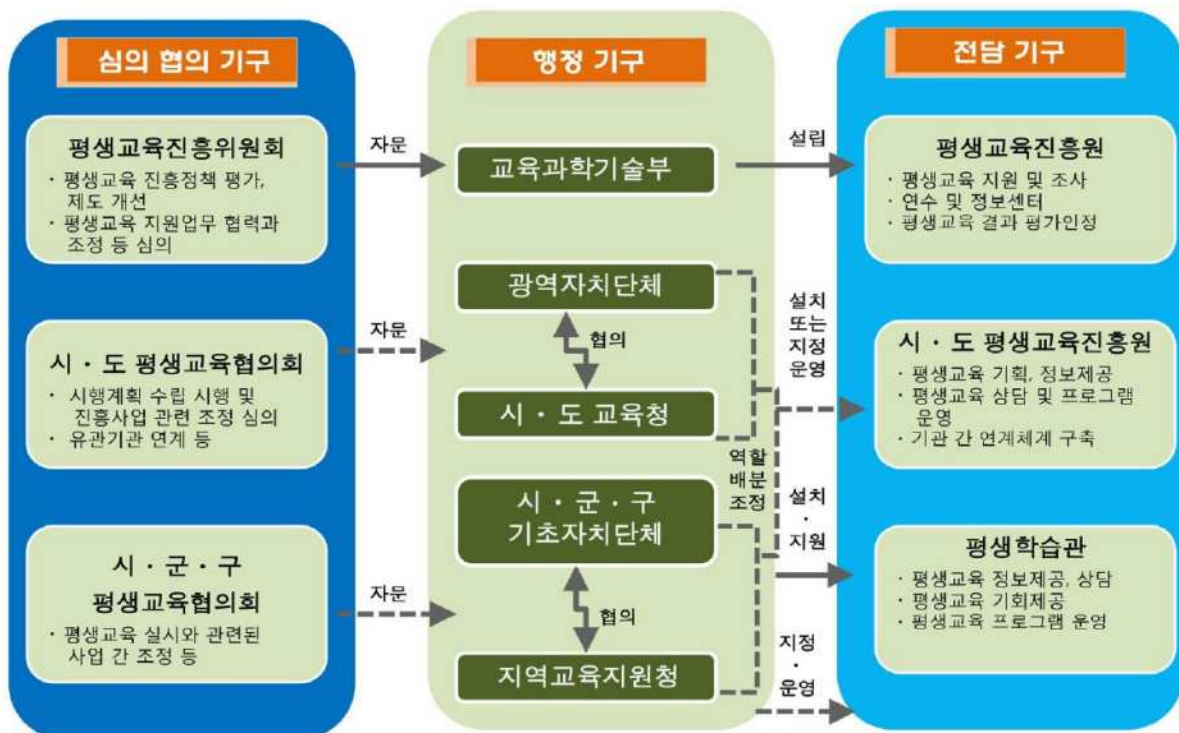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2012-2013 평생교육백서」

(4) 각 기관간의 역할

- 중앙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광역 차원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차원에서는 시·군·구평생학습관을 두어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계획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

[표 8]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의 특징

구분	중앙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명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설치자	국가가 설립	시·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이원화 운영체제 (지자체장 설치·지원, 교육감 지정·운영)
성격	(교육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 평생교육전담 집행기관	광역 시·도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평생교육사업기관
기능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조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평생교육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그림 3]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출처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2012 평생교육백서.

2-4. 평생학습 여건 및 강조점의 변화

- 지식기반사회, 창조경제사회 등 시대적 전환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개인성장과 국가발전이 상호 연계되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생교육이 자리잡고 있음. 최근 국제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은 ① 인적자본과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모델(neo-liberal model)과 ② 사회통합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노르딕(북유럽) 국가 중심의 사회적 시장모델(social market model)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과 창의를 추구함.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평생학습계좌제의 도입·운영 등 온 국민이 개별적 목적과 동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
- 참고로 최근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⁵⁾
 - 기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이 1,387개(전체 평생교육시설의 35.0%)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시설의 58.6% (2,324개)가 편중되어 있음
 - 시설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사무직원 수 모두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 부산, 대구 순임. 특히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전체 평생교육시설의 58.6%의 시설에서 61.3%의 프로그램, 82.0%의 학습자, 58.5%의 교·강사, 67.5%의 사무직원을 보유함. 따라서 평생교육시설도 수도권 밀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또한 기관당 프로그램 운영 수는 울산 65개, 충남 60개, 대구 52개 순으로 많으며, 학습자 수는 서울, 대구, 부산 순으로 나타남. 기관당 교·강사 수는 평균 18명으로 17개 시·도중 부산, 대구, 세종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도가 가장 낮은 13명으로 조사됨
- 제주지역의 평생학습기관⁶⁾(협의회 성격의 단체는 제외) 현황은 약 270여 개로 대부분 제주시에 위치해 있음. 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15.9%, 직업훈련시설이 16.6%, 복지관 13.3% 순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임
 - 제주지역 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학습시설은 10% 내외이며, 90%

5) 교육부,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2013. 11.

6)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이상 기타 법령에 의거한 평생학습 관련 시설로 제주시 187개, 서귀포시 84개로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생학습 관련 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음

- 제주지역의 평생학습기관 유형별로 보면(2011년 현황조사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552개(22.4%)로 가장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학교·학교부설이 476개(19.3%), 국가 및 지자체가 368개(14.9%), 도서관이 294개(11.9%)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 외 기관 및 시설은 10% 미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해서 제주지역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2013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인문소양·문화·여가·오락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총 4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1,455개 프로그램 운영과 총 3,754명이 참여하였음

○ 제주지역 평생학습 수요와 범위의 증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⁷⁾

- 평생학습 참여 대상자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2009년 9.8% → 2012년 28.7%)과 남성(2009년 9.0% → 2012년 23.5%) 참여비율 뿐만 아니라 학력과 소득, 인지도와 참여경험 모두 고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운영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 273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 분야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도민들은 '교양강좌' 프로그램(40.7%, 중복응답)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다음은 '학원수강' 프로그램(35.5%), 'TV 및 라디오, 인터넷 강좌' 프로그램(33.3%)등의 순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년간 제주지역에서 운영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민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비용(교육비)이 '무료'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학습을 위해 3만~5만원선 지출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어 유료학습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 향후 제주지역에서 운영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 도민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강의, 세미나, 워크샵'(34.5%)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다음은 '직업연수(훈련)를 통한 실습'(19.8%)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방식'(11.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제주지역에서 운영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의향을 밝힌 도민들은 주로 '주민자치센터'(16.1%)나 '인근 평생교육센터'(15.8%),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10.2%), '전문교육기관'(9.9%), '대학부설 평생교육원'(9.9%) 등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2012년 제주도민 평생학습 인지도 및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 2012. 9

-‘제주도가 도민 평생학습 생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 지원해야 할 연령층’으로 도민들은 ‘중년기(45~64세) 연령층’(46.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은 성인기(25~44세) 연령층(38.3%), ‘노년기(65세 이상) 연령층’ (15.6%) 순으로 응답했음

-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여건들은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이에 반해 주민들의 욕구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본 인프라 구축의 **확충**이 필요함

3. 계획의 시사점

(1) 일-학습-능력 연계성 강화

-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일-학습-능력 연계를 통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창조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학교, 직장, 사회에 일-학습이 양립 가능한 평생 학습체계 구축이 요구됨

(2) 지역주민 참여와 평생학습자 만족 극대화

-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민주도형 평생학습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이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자의 욕구, 특성, 학습행동 등의 특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매력도를 평가하여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3) 협업과 네트워크의 활성화

- 섬으로써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함
- 대내·외적으로 환경변화가 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재정 등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 지역 대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도록 함

- 공동 평생학습 활동을 통해 자원의 중복투자 방지에 의한 비용을 절감하고 평생학습 참여주체 간 상호보완을 통해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

(4) 평생학습 효과 극대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간 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 평생교육진흥원, 지역대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적·물적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및 시너지를 극대화함
- 단순히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홍보성 행사나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을 통한 집행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성, 학술활동, 행정지원, 기본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5) 평생학습 성과 및 관리의 체계화

- 평생학습 환경변화 및 평생학습 수요자 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드백을 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평생학습 환경감시시스템 도입에 의해 평생학습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식별하고, 이를 제주지역 평생학습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6)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

- 평생학습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확충을 해 나가야 함. 평생학습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인적자원 확충 및 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학습 성과 평가는 손익계산에 의한 성과 평가보다는 합리성 및 효과성 원리에 근거하여 진행해 나가야 함. 즉, 일회성 참여로 만족하는 학습이 아니라 평생학습자 관점에서 이들의 만족도와 효용성을 제고하고 총체적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장기 지향적 관점이 필요함

제 2 장 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1-1. 비 전

□ 『배움, 창조, 공유를 통한 글로벌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배움 : 학력(學歷)보다는 학력(學力)을, 만나는 사람을 스승으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습,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배움
- 창조 : 지식과 삶의 조화 추구, 혁신하는 태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조역량 강화
- 공유 : 학습을 통한 결과, 습득 지식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기여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 시대에 걸맞는 제주도민의 **학습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1-2. 목 표

- 제주지역 평생학습 비전 달성을 위해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1) 창조적 학습을 주도하는 행복한 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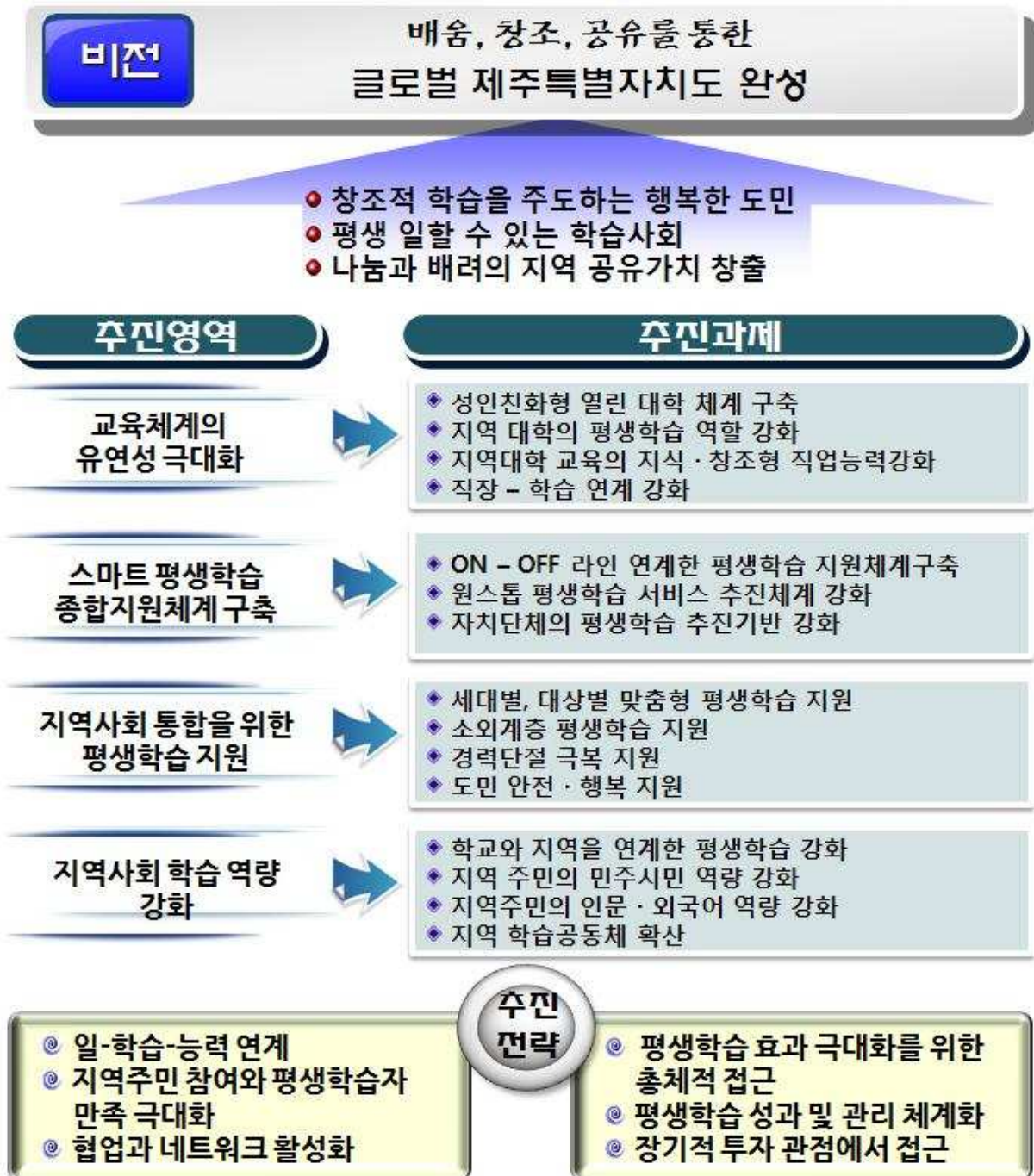
- 지식기반사회 및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여 도민들이 평생학습 접근의 용이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정보·지식 습득을 통한 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함

(2) 평생 일할 수 있는 학습사회

- 제주지역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이는 지역의 생산성 있는 노동력은 부족한 반면, 조직 퇴직자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기회 상실은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따라서 생계유지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도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의한 직업개발능력 향상을 통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야 함

(3) 나눔과 배려의 지역 공유가치 창출

- 갈등을 예방, 치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민주적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함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비전

2. 계획의 범위 및 주요 영역

2-1.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년(1개년 시행계획 중심)
- 사업의 특성상 부분적으로는 전년도 실적 등도 포함하고 있음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내용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중심으로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2-2. 계획의 주요 영역 및 과제

□ 사업 총괄현황

구 분	단위사업(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소 계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32	10	2	3	47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구축	25	10	10	8	53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19	9	12	3	43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40	11	12	3	66
합 계	116	40	36	17	209

□ 사업비 총괄현황

구 분	소요예산 (천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청	소 계
I.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5,683,600	879,500	85,000	97,877	6,745,977
II.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계 구축	2,880,234	481,920	494,632	542,455	4,399,241
III.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2,477,667	3,738,088	1,360,292	204,790	7,780,837
IV.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2,663,670	342,607	461,940	163,804	3,632,021
합 계	13,705,171	5,442,115	2,401,864	1,008,926	22,558,076

□ 세부 영역별 과제 현황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I. 교육 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제주 특별 자치 도	기술지원조정과	1-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640,000
		복지청소년과	1-2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20,000
		복지청소년과	1-3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59,000
		평생교육과	1-4	대학-지역간 연계 취업전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60,000
		보건위생과	1-5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인력 양성교육	20,000
		경제정책과	1-6	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 향상 교육	14,500
		경제정책과	1-7	사회적기업 교육 등 지원	20,000
		경제정책과	1-8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140,000
		기업지원과	1-9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10,000
		기업지원과	1-10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25,000
		관광정책과	1-11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18,000
		관광정책과	1-12	관광종사원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40,000
		미래전략산업과	1-13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국가지원사업)	2,480,000
		기술지원조정과	1-14	원에치료사 양성교육	30,000
		특별자치교육자원과	1-15	해외산업체 연계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442,000
		평생교육과	1-16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50,000
		평생교육과	1-17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3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18	안마사 교육 운영	7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1-19	노인대학원 운영	70,000
		제주센터	1-20	여성농업인교육	36,500
		제주센터	1-21	농기계 현장수리 지원 및 안전 교육	59,600
		제주센터	1-22	농업인 전문교육	190,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3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190,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24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	88,000
		동부농업기술센터	1-25	농업인전문교육	25,000
		서부농업기술센터	1-26	농업인 전문교육	56,500
		서부농업기술센터	1-27	농업전문인 양성교육(서부)	54,000
		서부농업기술센터	1-28	농업인 전문교육	97,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29	여성전문교육 운영	143,000
		도립미술관	1-30	미술관 대학 운영 지원	40,000

구 분	추진 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제주시	세계환경수도정책관실	I-3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85,000	
	세계환경수도정책관실	I-32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80,000	
	총무과	I-33 제주시 직장외국어교육	10,000	
	농정과	I-34 농업성공대학 지원	187,500	
	농정과	I-35 우도 땅콩 명품화사업(S/W)	440,000	
	자치행정과	I-36 직장인평생교육	20,000	
	자치행정과	I-37 직장인 그룹활동	10,000	
	여성가족과	I-38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27,000	
	지역경제과	I-39 시민경제대학 운영	20,000	
	문화예술과	I-40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지원	15,000	
	문화예술과	I-41 역사문화 박물관 대학 운영	30,000	
	축산과	I-42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12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I-4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지역역량 강화사업	50,000
		평생교육지원과	I-44 서귀포시민대학	35,000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I-51 사회단체지원	43,000
		제주시교육지원청	I-52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운영지원	27,38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I-53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운영지원	27,489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II. 스마트 평생 학습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II-1 사회복지협의회 전산교육장비 구입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2 노인대학원 강의 교재 발간비	11,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3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실 임대료	18,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4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실(교육관)장비 구입	33,000
		경제정책과	II-5 제주 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 지원	130,000
		농업기술원 총무과	II-6 농어업인회관내 교육용 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입	14,0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II-7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430,000
		특별자치교육지원과	II-8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00,000
		교육운영과	II-9 전문교육 교재 발간	24,000
		평생교육과	II-10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18,000
		평생교육과	II-11 비정규학교 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	50,000
		평생교육과	II-12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00,0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평생교육과	11-13 "글로벌 챌린지 퀴즈캠프" 방송사업 운영	230,000	
	평생교육과	11-14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54,000	
	문화정책과	11-15 제주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 사업	300,000	
	정보정책과	11-16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시설지원	85,034	
	환경자산보전과	11-17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400,000	
	자치경찰단	11-18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 교육교사 지원	14,400	
	세정담당관	11-19 부가치세 환급특례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1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1-20 교육용 컴퓨터 교체	34,000	
	제주센터	11-21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	143,2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11-22 농촌교육농장시범	71,600	
	동부농업기술센터	11-23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36,000	
	동부농업기술센터	11-24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42,000	
	동부농업기술센터	11-25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	12,000	
	제 주 시	안전총괄과	11-26 실전체험훈련장	28,400
		자치행정과	11-27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12,000
		자치행정과	11-28 제주시 평생학습대회 개최	15,000
		자치행정과	11-29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60,000
		경로장애인복지과	11-30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140,000
		여성가족과	11-31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120,000
		정보화지원과	11-32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신장비 유지 보수	59,520
		정보화지원과	11-33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	22,000
		일도2동	11-34 서진태영아파트 새마을문고 시설 및 도서구입	15,000
		노형동	11-35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 구입	10,000
	서귀 포 시	자치행정과	11-36 저소득층 문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0
		평생교육지원과	11-37 평생학습관 외부도색 정비공사	30,000
		평생교육지원과	11-38 평생학습관 대강당 구내방송시설 교체공사	10,000
		평생교육지원과	11-39 평생학습축제지원	39,500
		주민생활지원과	11-40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24,000
		사회복지과	11-41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10,000
		사회복지과	11-42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38,000
		사회복지과	11-43 노인대학원 운영비	60,000
		여성가족과	11-4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운영비	148,132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여성가족과	II-4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운영비	25,000
	학교생활문화과	II-46 평생교육시설 지원	146,500
	제주학생문화원	II-47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95,800
	서귀포학생문화원	II-48 평생학습관 운영(서귀포학생문화원)	38,825
	제주교육박물관	II-49 평생학습관 운영(제주교육박물관)	54,740
	한수폴, 동녕도서관	II-50 평생학습관 운영(한수폴, 동녕)	32,240
	송악, 제남도서관	II-51 평생학습관 운영(송악, 제남)	34,170
	평생교육체육과	II-52 평생교육 지원	12,520
	서귀포학생문화원	II-53 평생교육지원	19,100
	제주학생문화원	II-54 평생학습축제	108,260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Ⅲ.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 학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III-1 공동모금회 희망니눔교육 사업	20,000
		복지청소년과	III-2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지원 및 학업지원	193,867
		여성가족정책과	III-3 다문화가정 문화 역사 언어교육 운영	3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4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교육 운영	4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5 제주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대상 제주화 교육실시	5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6 갯년기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60,000
		여성가족정책과	III-7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 운영	50,000
		친환경농정과	III-8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160,000
		수산정책과	III-9 외국인 선원 교육훈련비 지원	1,070,000
		기술지원조정과	III-10 품목별농업인 현장교육 지원	20,000
		노인장애인복지과	III-11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0
		보건위생과	III-12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비	20,000
		수산정책과	III-13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지원	120,000
		기술지원조정과	III-14 새농업기술강좌 및 농업현장 체험교육	60,000
		문화정책과	III-15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0,000
		골목상권살리기 추진단	III-16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30,000
		제주센터	III-17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46,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II-18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	35,000
		환경수도정책관실	III-19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추진	442,800
	제	스포츠지원과	III-20 유소년체육 육성교실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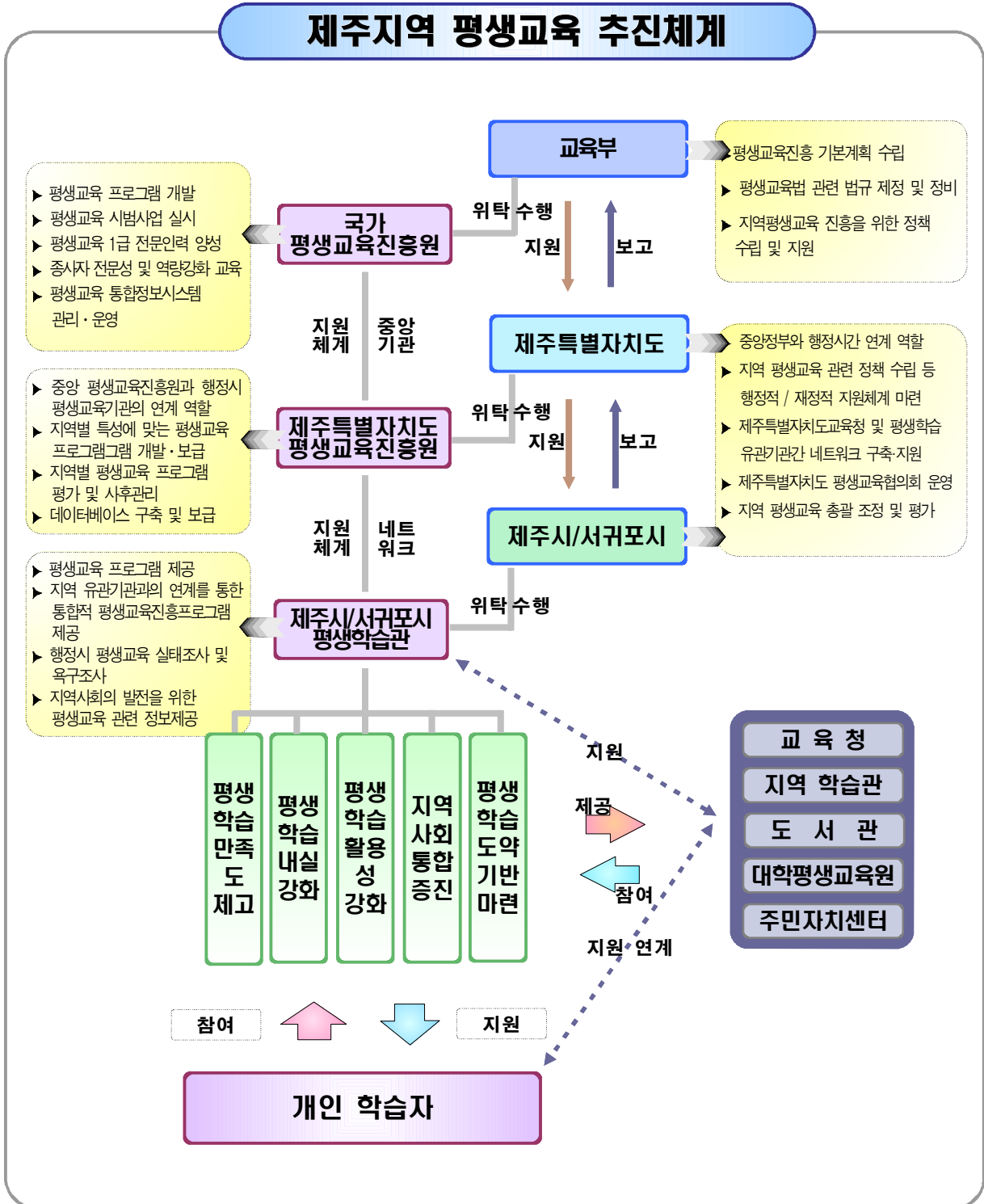
구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주 시	여성가족과	III-2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78,059
	여성가족과	III-22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676,135
	여성가족과	III-23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2,244
	경로장애인복지과	III-24 경로당순회교육	18,000
	경로장애인복지과	III-25 노인교실 운영	60,000
	경로장애인복지과	III-26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811,350
	관광진흥과	III-27 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한림읍	III-28 제7기 한수풀해녀학교운영	22,300
서 귀 포 시	평생교육지원과	III-29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870,000
	평생교육지원과	III-30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15,000
	평생교육지원과	III-31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00
	평생교육지원과	III-32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10,000
	평생교육지원과	III-33 여성능력개발항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127,180
	사회복지과	III-34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11,000
	사회복지과	III-35 노인교실 운영비	14,400
	여성가족과	III-36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32,484
	여성가족과	III-37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2,000
	여성가족과	III-3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주5일 수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직영)	12,000
	여성가족과	III-39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위탁)	35,000
	여성가족과	III-4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01,228
교육청	교육복지과	III-41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132,640
	교육복지과	III-4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72,150

구 분	추진기관명	주요 사업명	소요예산	
IV. 지역 사회 학습 역량 강화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문화정책과	IV-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90,000
		문화정책과	IV-2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10,000
		문화정책과	IV-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41,760
		여성가족정책과	IV-4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30,000
		여성가족정책과	IV-5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보건위생과	IV-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60,000
		보훈과	IV-7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비	10,00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경제정책과	IV-8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활동	33,000
	경제정책과	IV-9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50,000
	경제정책과	IV-10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최 사업비	10,000
	정보정책과	IV-11 고령자 정보화 교육 지원	10,000
	식품산업과	IV-12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37,000
	수산정책과	IV-13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공동체 교육훈련	36,000
	수산정책과	IV-14 수산질병 방역교육	120,000
	기술지원조정과	IV-15 농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40,000
	기술지원조정과	IV-16 귀농귀촌 교육	20,000
	교육운영과	IV-17 바우처교육비	15,000
	교육운영과	IV-18 바우처교육	15,000
	평생교육과	IV-19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	50,000
	평생교육과	IV-20 탐라의 얼 아카데미 운영	17,400
	평생교육과	IV-21 도민 정보화교육 운영	121,100
	평생교육과	IV-22 도민사회교육 운영	111,350
	평생교육과	IV-23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0
	평생교육과	IV-24 중국어 사이버학습 강좌 보강사업	100,000
	평생교육과	IV-25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위탁교육	200,000
	친환경농정과	IV-26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98,000
	지치행정과	IV-27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	10,000
	평화협력과	IV-28 평화아카데미 운영	60,000
	환경자산보전과	IV-29 자연생태 홍보 전시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00,000
	환경자산보전과	IV-30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40,000
	인재개발원	IV-31 시청각(e-러닝) 교육	10,000
	도립미술관	IV-32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74,200
	보훈청	IV-33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사업	1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IV-34 문화교육 운영	55,000
	문화재관리	IV-35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25,000
	제주센터	IV-36 녹색생활 실천 전문화 교육	24,00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IV-37 귀농귀촌교육 현장 실습지원	42,000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	IV-38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10,000
	환경수도정책관실	IV-39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추진	142,860

구 분	추진기관명	주 요 사 업 명		소요예산	
제 주 시	환경수도정책관실	IV-40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관련자료 제공	20,000	
	관광진흥과	IV-41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위탁 운영	30,000	
	안전총괄과	IV-42	안보교육	11,447	
	자치행정과	IV-43	열린시민교육	20,000	
	자치행정과	IV-44	전통공예과정교육	10,000	
	문화예술과	IV-45	문화플랫폼사업	20,000	
	문화예술과	IV-46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10,000	
	축산과	IV-47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44,300	
	축산과	IV-48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94,300	
	정보화지원과	IV-49	읍면지역 정보화교육	36,000	
	종합민원실	IV-50	친절리모델링 현장코칭 교육	22,000	
	참사랑문화의집	IV-51	참사랑 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44,560	
	정보화지원과	IV-52	정보화교육	32,500	
	자치행정과	IV-53	귀농귀촌 정착 교육 사업	72,000	
	관광진흥과	IV-54	제주올레 아카데미운영	10,000	
	녹색환경과	IV-55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운영	15,000	
	평생교육지원과	IV-56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74,440	
	평생교육지원과	IV-57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50,000	
	사회복지과	IV-58	충효-한문교실운영	15,000	
	여성가족과	IV-59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	14,000	
	지역경제과	IV-60	창업 아카데미 운영	25,000	
	지역경제과	IV-61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교육	12,500	
	축산과	IV-62	승마 아카데미 운영	131,500	
	동흥동	IV-6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10,000	
	교 육 청	학교생활문화과	IV-6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60,000
		학교생활문화과	IV-65	성인문자해득교육운영	15,044
		제주학생문화원	IV-65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88,760

3. 제주지역 평생교육 추진체계



제 2부

2014년 영역별 시행계획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제 1 장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I-1.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 맞는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체계 구축
 - ※ 사업시행 근거
 -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도일원(제주대학교, 농업기술원)
- 사업량 : 7개 품목전공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640,000천원(광특 320,000, 지방비 320,000)

향후 추진계획

- 수료생 대상 농업마이스터 자격 취득후 후계농 지도 및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턴트, 현장교육 등 자격부여
-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 확립
 - 교육생 수준 및 학기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I-2.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역량 강화
- 청소년지도사 교육-연수를 통한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발
 - ※ 사업시행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0조

사업개요

- 건 명 :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량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70여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청소년지도사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I-3.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 사업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9,000천원(도비) * 정액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실무교육 등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추진(11월~12월) : 4회, 240명 참여 예정

I-4. 대학-지역간 연계 취업전문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전문화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대학(교)과 지역기업체간 연계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 대학(교)
- 내 용
 - 대학~기업체간 협력 고용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전략산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등 자립형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을 각 영역별로 발굴, 추진

I-5.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인력 양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의료관광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와 진료시 병원내 의료진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 외국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 **부가적** 서비스 제공
-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

사업개요

- 건 명 :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인력 양성교육
- 위 치 : 제주한라대학교
- 교육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종사자 등
- 교육내용 : 의료관광산업의 이해, 고객 의료서비스, 실무 외국어 등
- 교육인원 : 50명(영어, 중국어)
- 교육기간 : 2014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외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
 - 통역인력 양성교육 세부계획 수립 : 2014년 2월
 - ※ 교육대상자 모집·선정, 교육실시 등
 - 통역인력 양성교육 : 2014년 5월부터

I-6. 노동교육상담소 직무능력 향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 소재 지역상담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 활성화를 위한 간부 워크숍 개최
- 제주지역 전문 상담직원 능력 향상 교육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9월
- 지원대상 : 지역노동단체 협의체(노사민정협의체 소속 회원단체)
- 총사업비 : 14,500천원(도비 10,000, 자부담 4,500)
- 사업내용 : 상담직무 능력향상 교육(3일), 간부 워크숍(2일)
- 참석대상 : 약 70명(중앙법률원 7명, 전국지역상담소 48명, 제주 본부 15명)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신청 접수 : 2014년 1월
-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비 교부 : 2014년 3월 ~ 4월

I-7. 사회적 기업 교육 등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제품박람회 참석을 통한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 및 도외 홍보 활성화
 - 사회적기업 전국 세미나, 교육 참석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 대표자 역량강화
- ※ 시행 근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 및 제12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량 : 사회적기업 세미나, 교육, 제품박람회 행사 참석 지원 1석
- 대상 :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 사회적기업대표·실무자 등
- 사업내용 : 전국 제품박람회, 세미나, 교육 여비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 제품 도의홍보를 위한 제품박람회 참여 안내

I-8.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취업시즌을 앞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명강사를 활용, 직업교육 추진으로 직업의식 고취 및 이직률 최소화
- ※ 시행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 등의책무), 제12조(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사업개요

- 사업량 : 도내 대학(교)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7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사업계획 확정 통보
- 2014년 2월 사업비 교부

I-9.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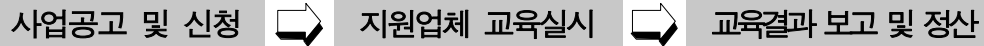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기업생존의 필수요건인 인재 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내 산업기반 확충 및 투자 확대 유도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중소기업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 추진절차



- 사업량 : 도내 중소기업 10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광특 10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작성 : 2014년 1월
- 교육 추진 : 2014년 2월 ~ 12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15년 1월

I-10.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 사업의 필요성

-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도의 경영기법 전수로 소상공인의 자립 도모
- 창업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창업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 기여
- ※ 시행근거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건 명 :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 사업량 : 소상공인 전문 창업교육 10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도비 100%)

□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소상공인 전문 창업아카데미 운영성과 평가(2014년 1월)
- 2014년 소상공인 전문창업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추진
(나사장! 프로젝트와 연계)

I-11.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사업의 필요성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운영 중)
-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및 워크숍 참가, 타시·도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만의 독특한 해설기법 함양
※ 시행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 사업량 : 보수 교육 현장답사 1회
- 사업대상 : 2014년 활동 예정 문화관광해설사 대상(12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월
- 사업비 : 18,000천원(행사실비보상금)

향후 추진계획

- 문화관광해설사 현장답사 계획수립 : 2014년 1월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현장답사 : 2014년 2월중

I-12. 관광종사원 교육 및 컨설팅 추진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시대의 관광 서비스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종사원의 마인드 함양과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 관광종사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소양 및 친절·서비스 교육, 외국어 교육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명 : 관광종사원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사업량 : 업종별 교육, 컨설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주체 : 제주관광공사
- 사업비 : 70,000천원(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향후 추진계획

- 관광중사원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2014년 2월 ~ 12월

I-13.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IT융합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제자유도시 실현 및 첨단화를 선도할 특성화된 전문인력 양성
- 도내·외 특정기업, 산업체의 맞춤형 인재양성 트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공학계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
 - ※ 시행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2012. 4월)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 사업량 :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지원(제주대 산학협력단 내)
 - 지역산업과 대학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공학교육 혁신전략 수립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방법 개선
 - 교육·연구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 주관부처 : 교육부
- 총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21년 2월
- 총 사업비 : 3,1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00, 기타 900)

향후 추진계획

- 3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3월
-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 : 2014년 4월 ~

I-14. 원예치료사 양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실버산업의 최적지로 부각되면서 원예치료에 대한 관심 고조
- 원예의 **생활화와** 기술교육을 통한 원예치료사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체 및 정신 지체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고령화 시대 복지농촌 구현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업량 : 1과정 7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30,000천원(광특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세부계획 수립 실시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강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I-15. 해외산업체 연계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해외에 진출한 한국산업체 등의 인력 및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 학생을 위탁받아 산업체 수요에 맞는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 모델사업으로 국제화를 선도하는 전문대학 육성 도모

※ 시행근거 :

- 제주특별법 제189조
-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사업개요

- 건 명 : 해외산업체 연계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
- 사업대상 :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량 : 해외산업체 연계 교육선도 전문대학 육성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442,000천원(국비 77%, 지방비 4.5% , 자비 18.5%)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교부 : 2014년 8월
- 보조금 정산 검사 : 2015년 2월

I-16. 학력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비정규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균등교육과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대 상 : 비정규학교 5개교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제주등하학교, 서귀포 오석학교
- 사 업 량 :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문해교육, 중·고졸 검정고시, 인문소양문화예술 등 평생 학습 참여 기회 확대

I-17. 골프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양성과정을 통한 일자리창출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 실무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3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마무리 : 2013. 11. 26일 수료예정

- 2014년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운영으로 청년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I-18.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재활 도모
※ 시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사업개요

- 건 명 :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마사교육 운영 지원
- 사업주체 : (사)대한안마사협회제주지부(지부장 김두홍)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학년 8명 현장학습 및 수료 예정
- 2014년도 시각장애인 15명 발굴, 수련원 입소 예정

I-19. 노인대학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노인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양창진)
- 교육대상 : 노인대학원생 300명(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 노인대학원(도) 2년 → 3년 / 노인대학(행정시) 1년 → 2년
- 교육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육운영비 등
- 총사업비 : 70,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 : 2년 과정 → 3년 과정으로 확대 운영

I-20. 여성농업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 습득 기회 마련
- 농업 및 사회분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함양하는 여성농업인 양성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사업개요

- 건 명 : 여성농업인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5,0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 ~ 12월
- 2014년 사업비 : 16,5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성농업인이 농촌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부여

I-21. 농기계 현장수리 지원 및 안전교육

사업의 필요성

- 현장밀착 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으로 적기 영농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경영비 절감
- ※ 시행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사업개요

- 건 명 : 농기계 현장 수리지원 및 교통안전 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000대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9,6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 소유 고장난 농기계 수리지원 : 50회 1,000대
- 농기계 보관·관리요령 및 안전사용 교육 : 700명

I-22.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
- 친환경농업 등 고객 맞춤형 현장위주의 교육으로 농가애로 사항 해결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사업개요

- 건 명 : 농업인 전문교육
- 위 치 : 제주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60회 4,5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90,000천원(광특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 추진 및 교육수료자 DB화 구축

I-23.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능력을 배양하고, FTA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영농사항을 해결,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10개 과정, 7,5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0천원(광특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1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2014년 11월

I-24. 농기계 교육훈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농기계 사용기술 및 경정비, 안전사용 등의 실기교육으로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 신기종 농기계 확보로 농업인 최신 기술 습득 및 교육 내실화 기여
※ 시행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교육훈련장비 구입 6대, 교육훈련 4회 15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44,000천원(광특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 사용 및 자가정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이용기술교육 추진

I-25.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 현장밀착형 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 농업인 경쟁력 증대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 업 량 : 50회, 2,5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5,000천원(광특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농업인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향후 추진계획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 50회 2,500명
(2014년 1월 ~ 2월)
- 농업인 선진농업현장 교육 : 10회 500명(2014년 3월 ~ 12월)

I-26.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 권역에 걸맞는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 기술 보급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
- 사 업 량 : 3과정 5,500명
 - 농업인 실용 교육 3,0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000명, 농업인 현장애로

- 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6,500천원(광특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한라봉 상설교육 등 3과정 22회 1,500명

I-27. 농업전문인양성교육(서부)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 권역에 걸맞는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 기술 보급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개요

- 위 치 : 한림, 한경, 대정, 안덕
- 사업량 : 3과정 5,500명
 - 농업인 실용 교육 3,0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000명,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4,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전문교육 : 4개소 5개월 농업연수 추진

I-28.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 권역에 걸맞는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업 기술 보급 교육 등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집합·실습,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으로 신지식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개요

- 위 치 : 서부지역 일원
- 사 업 량 : 3과정 5,500명
 - 농업인 실용 교육 3,000명, 품목별 전문교육 2,000명, 농업인현장으로 기술 교육 5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47,500천원(광특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한라봉 상설교육 등 3과정 22회 1,500명

I-29. 여성전문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에게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도민의 꿈 실현에 선두자 역할
- 양성평등 및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공감대 형성

사업개요

- 사 업 량 : 39개 과정 · 4,0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금143,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민에게 문턱을 낮추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교육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
- 2014년 연간교육 계획 수립 : 12월 중

I-30. 미술관 대학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의 문화수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예술(미술) 감성과 창의력 발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4 ~ 10월(6개월)
- 모집대상/인원 : 도민 150명 내외
- 강좌 수 : 33강좌(매주 수요일 운영)
- 예산액 : 40,000천원
- 운영방식 : 독립미술관 자체운영
 - 국내 저명강사, 교수, 화가 등 예술인 초빙 강좌운영
 - 스케치, 미술실기 등 현장 교육 병행 실시
 - 도내 미술관 및 박물관 견학 등

향후 추진계획

- 제2기 미술관 대학 운영계획 마련 : 2014년 2월
- 수강생 모집공고 및 대상자 확정 : 2014년 3월
- 제2기 미술관 대학 운영 : 2014년 4월

I-3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사업의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환경부 지정 양성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있는 해설사 양성 배출로 일자리 창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 ※ 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대상자 모집 : 2014년 1월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추진 및 워크숍 개최 : 2014년 3월 ~ 12월

I-32.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운동을 선도할 환경전문가 육성
- 환경지식과 가치관을 배양하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지도자의 자질 개발
- ※ 시행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간 협약서

사업개요

- 사업량 :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교육인원 : 80명 내외(환경관련 종사자, 단체회원 등)
- 사업수행자 :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 총사업비 : 4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제13기 고급환경전문가과정 2014년도 신입생 모집 : 2014년 1월
- 고급 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 운영 : 2014년 3월 ~ 12월

I-33. 제주시직장외국어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제주시 직장외국어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및 교재 구입 등(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 운영)

-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한 조직 발전에 기여

사업개요

- 교육주관 : 제주시
- 교육내용 :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과목 실전회화 및 외국어 능력배양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1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I-34. 농업성공대학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업인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FTA 대응방안 모색 및 농업소득 향상추진
-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욕구에 부응
※ 시행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 제24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지역농협 10개소
- 사 업 량 : 매년 1,000명(농협별 1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87,500천원(도비 150,000, 자부담 37,500)
- 지원내용 : 지역농협 농업성공대학 운영 경비 지원(강사료, 교재 유인 등)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2월 : 지원계획 수립
- 2014년 3월 : 학생 모집 및 교육생 선발 등
- 2014년 4월 ~ 12월 : 입학식 및 농업성공대학 운영, 사업비 정산

I-35. 우도 땅콩 명품화사업(S/W)

사업의 필요성

- 우도지역의 향토자원인 땅콩을 활용 2·3차 산업과 연계·발전
- 땅콩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시행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주민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가공식품 연구개발, 브랜드 개발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우도땅콩명품화사업단(단장 우도면장)
- 총사업비 : 440,000천원 (광특 200,000, 지방비 200,000, 자부담 40,000)

향후 추진계획

- 인터넷쇼핑몰 및 우도땅콩 판매·전시관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 등 브랜드 가치 제고

I-36. 직장인평생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직장인의 자기개발과 퇴근 후 건전한 여가 활동
 - 학습 기회 확대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직장인 평생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홈페이지, 생활푸드 등 평생학습 강좌 강사수당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 공고, 프로그램 운영
- 주 5회 / 19:00 ~ 21:00

I-37. 직장인 그룹활동

사업의 필요성

- 직장인들 중심의 동아리 그룹활동을 통한 여가 활용기회 제공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직장인 그룹활동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업량 : 포크기타, 서예, 환경오염기행반등 평생학습 강좌 강사수당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 공고, 프로그램 운영
- 주중 19:00 ~ 21:00 / 주말 운영

I-38.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지역사회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으로 창조적 여성능력 개발
※ 시행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대학로 102(아라1동)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5. 1월
- 총사업비 : 2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도 세부운영계획 수립 : 2014년 1월
- 수강생 모집 : 2014년 2월
- 개강 및 운영 : 2014년 3월

I-39. 시민경제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으로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향상
- 시민 경제의식 제고로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경제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현

※ 시행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시민경제대학 시민강좌 운영(수강생 100명 예정)
- 사업방법 : 대행기관(공기관) 검토 후 선정위탁 운영
 - ※ 2013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위탁 운영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2월 : 대행기관 선정,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수강생 모집 등)
- 2014년 3월 ~ 11월 : 시민경제대학 운영 및 정산

I-40.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대 제주 향토사, 제주문화의 이해 등 강좌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

※ 시행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사업개요

- 사업량 : 제6기 제주문화원 문화대학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정액)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2014년 문화대학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2월 ~ 12월 : 수강생 모집 및 문화대학 운영

I-41. 역사문화 박물관 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전통문화 및 향토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애호사상을 함양시키는 시민문화 교육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30강좌(수강생 12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2월 : 2014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협약
- 2014년 3월 ~ 12월 : 역사문화 박물관대학 운영

I-42.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실용 교육 실시
- ※ 시행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건 명 : 제2기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 위 치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및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
- 사업량 : 2개분야 100명(한우 50명, 양돈 5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결과 피드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축산인의 의식·실력·마인드 선진화 도모

I-4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 등 외부 위협요인 증대로 마을 자체적으로 어려움 극복 한계
- 주민,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자원과 마을발전 컨설팅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 ※ 시행근거 : 농특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제63조, 제71조

사업개요

- 건 명 : 서귀포시 지역역량강화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5개마을
- 사업량 : 주민교육 및 마을발전 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농촌전국 박람회 참가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50,000천원(광 35,000, 지 15,000)

향후 추진계획

- 마을발전 교육 대상 마을 선정 : '13. 11. ~ 2014년 1.
- 마을발전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교육 운영 : 2014년 1.~ 6.
- 마을발전 마을자원조사 : 2014년 5. ~ 10.
- 농촌 전국박람회 참가 및 선진지 견학 : 2014년 8. ~ 10.

I-44. 서귀포시민대학

사업의 필요성

- 서귀포 시민대학은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귀포 평생학습의 산실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 지속 개발 및 지역인재 양성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 사업량 : 3개 과정(14회)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35,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글로벌아카데미(읍면권) 운영 : 2014년 2월 ~ 12월(연10회 예정)
- 문화아카데미 운영 : 2014년 6월 ~ 9월(2회)
 - 영화, 음악, 문학 등 문화의 대표적 예술가 초청 강연 및 대담
- 청소년 리더십 향상과정 운영 : 2014년 7월 ~ 8월(2회)
 - 청소년들의 자기관리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토론식 교육

I-45. 사회단체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인간교육 실현학부모연대제주지부, 참사랑실천학부모회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제주특별자치도문우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전국주부교실중앙회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 선정기준 : 사회단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000천원
- 사업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9개 단체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보조금 지원 : 2014년 2월
- 보조금 정산서 수합 및 검토 : 2014년 12월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I-46.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운영지원(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의 필요성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사업 점차 확대
 - 방과후학교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업무 과중 및 학교 현장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원(업무처리, 컨설팅 등) 전담인력 필요
-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송부」 (교과부 학부모지원과-3095, 2011.7.29.)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시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1명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388천원
- 사업내용 :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인건비

향후 추진계획

-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및 현장지원(업무지원, 연수, 컨설팅) 강화
- 방과후학교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업무 과중 해소
- 학교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원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기여

I-47. 방과후학교 전담인력 운영지원(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업의 필요성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및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 방과후학교 사업 확대에 따른 행정 업무 과중 및 학교 현장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원(업무처리, 컨설팅 등) 전담인력 필요

※ 시행근거 :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교과부 학부모 지원과-3095, 2011.7.29.)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7,489천원
- 사업내용
 - 방과후학교 전담인력인건비 지원

추진계획

-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방과후학교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학교현장 컨설팅
- 방과후학교 현장 컨설팅 및 업무지원으로 효율적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기여

제 2 장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 구축

II-1. 사회복지협의회 전산교육장비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교육프로그램인 ‘사회복지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노후화된 전산교육장비를 교체하여 상시적이고 안정된 교육환경 마련
- ※ 시행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동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6월
- 사업비 : 22,000천원(도비 20,000 차부담 2,000) * 90%사업(민자)
- 사업량 : 전산교육장비(노트북) 20대 구입

향후 추진계획

- 전산교육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정보화 능력 배양

II-2. 노인대학원 강의 교재 발간비

사업의 필요성

- 노인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양창진)
- 교육대상 : 노인대학원생 300명(1년 100명, 2년 100명, 3년 100명)
※ 노인대학원(도) 2년 → 3년 / 노인대학(행정시) 1년 → 2년 / 강의횟수 : 72회 → 108회
- 교육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지원내용 : 노인대학원 교재 발간비
- 총사업비 : 11,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노인대학원 운영 지원 : 2년 과정 → 3년 과정으로 확대 운영

II-3.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실 임대료

사업의 필요성

- 도 노인복지관 교육실 협소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복지관 주변건물 임차를 통해 어르신들의 각종 교육욕구를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도모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 교육관 임대기간 : 5년 이상으로 함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관장 김문국)
- 총사업비 : 18,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관 건물 임차 후 내부바닥 보수 및 프로그램 장비 도입
- 도 노인복지관 일부 프로그램(스포츠댄스, 실버요가 등) 진행

II-4.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실(교육관)장비 구입

사업의 필요성

- 도 노인복지관 임차건물 교육실 장비보강으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사회 교육 욕구 해소 및 활기찬 노년생활 도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장(관장 김문국)
- 총사업비 : 33,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II-5. 제주 지역경제 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제교육을 담당
 -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교육기관 및 전문성 있는 강사의 부족으로 경제교육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경제생활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사업개요

- 운영기관 : 제주발전연구원(2009. 8월 기획재정부 지정)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30백만원(국비 110, 도비 20)
 - ※ 국비는 제주발전연구원(제주지역경제센터)으로 직접 교부
- 주요내용
 - 제주지역 도민, 청소년, 교사 등 대상별 특화 경제교육
 -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소외계층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II-6. 농어업인회관 내 교육용 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입

사업의 필요성

- 농어업인회관(세미나실, 2층)에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을 연간 100회이상 개최됨에 따라 교육용 영상 및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업인 대상 교육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 건 명 : 농어업인회관내 교육용 영상 및 방송시스템 구입
- 위 치 : 제주시 연동 313-105번지(농어업인회관내 세미나실)
- 사 업 량 : 교육용 영상 및 방송 시스템 구입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4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4월 : 구입설치
- 2014년 4월 ~ : 교육용 영상 및 방송시스템 운영

II-7.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방과후 보육·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 시행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 제2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사업개요

- 건 명 : 초등돌봄교실 운영
- 사 업 량 : 초 109개교 120교실
 - 오후돌봄교실 : 109교 120교실
 - 아침부터 야간까지 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 12개교 13교실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총사업비 : 3,620,000천원(도비 430,000, 교육청 3,190,000)

향후 추진계획

- 초등돌봄교실 점진적 확대(2013학년도 초 1,2학년 전면 무상 돌봄실시)

II-8.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농어촌 학생들에게 방과 후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질계발·학력향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국정현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어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
- ※ 시행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제2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

사업개요

- 건 명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사 업 량 : 182교(초 110. 중 43. 고 29)
 - 도내 초, 중, 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총사업비 : 4,000,000천원(도비 200,000천원, 교육청 3,8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운영비 확대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II-9. 전문교육 교재 발간

사업의 필요성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 신뢰받는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 교재 발간으로 교육의 효과 극대화

사업개요

- 사 업 량 : 80회·3,01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전문교육 과정 운영(11월~12월) : 13회·428명
-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별 교재 발간으로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II-10.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전국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 학습 문화증진을 위한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에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홍보·체험할 수 있는 ‘제주지역관’ 운영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위 치 : 교육부 공모에 의거 개최지 매년 선정
- 사업량 : 홍보 체험부스 설치 및 운영경비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0월 중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참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II-11. 비정규학교 기반시설 확충 정비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비정규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원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욕구 진작과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
- ※ 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사업개요

- 대 상 : 비정규학교 5개교

- 사업량 : 비정규학교 시설보수, 교육기자재 보완 등 교육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 개선으로 학습욕구 진작

II-12.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의 필요성

- '12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치(위탁운영 방식)
 -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 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1조

사업개요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2팀 7명, 원장포함)
- 운영형태 :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위탁운영
- 주요기능
 - 도 평생교육 정책수립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평생교육 정책연구 지원 및 통계조사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광역단위 평생교육 진흥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네트워크 사업 추진으로 도민 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II-13. “글로벌 챌린지 퀴즈캠프” 방송 사업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경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과 외국어학습 동기 부여
- 학교간 자연스러운 경쟁유도를 통해 외국어교육에 대한 시너지효과 발생
- ※ 시행근거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12개월)
- 대 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1,200여명
- 사 업 량 : 방송 50회 (1회 60분)
- 사업내용 : 방송을 통한 도내 도민과 청소년 대상 외국어 퀴즈대회 운영 지원
- 총사업비 : 2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종전 영어중심 편성에서 중국관광객 증가와 교류추세에 대비 중국어 프로그램 확대 및 특집방송 편성을 통한 도민 관심도 제고 및 사업효과 극대화

II-14. 사이버 외국어 어학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외국어 사이버학습 지원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외국어 학습 기회 제공
-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및 교육효과 제고

사업개요

- 건 명 : 사이버 외국어어학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2. 1 ~ 2015. 1. 31
- 사 업 량 : 영·일·중국어 총 434개 어학 콘텐츠(강좌) 운영
- 회화 및 청취, 비즈니스, 시험대비 및 어린이 초등영어 등
- 총사업비 : 27,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과정 및 학습 콘텐츠 다양화 추진
- 도민 및 학생 외국어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II-15. 제주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학교·문화시설·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술교육 자원 확보 및 정보 공유
- 제주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인적 자원 발굴 육성
※ 시행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제6항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국비 150,000 도비 150,000)
- 주 관 : 제주문화예술재단

향후 추진계획

- 지역센터, 지자체, 교육청 관계자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육성 추진
- 문화예술 교육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II-16.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시설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
※ 시행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대 상 : 장애인
- 사 업 량 : 5개소(1,1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5,034천원(국비 42,517 도비 42,517)

향후 추진계획

- '14년도 장애인 정보화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14. 1월
- '14년도 사업공고,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 '14. 2월
- '14년도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추진 : '14. 3월 ~ 12월

II-17.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기후변화대응 교육·훈련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호지역과 연계한 특화된 기후변화 교육 모델 구축으로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교육·연구·조사 등 세계적 교육센터로 육성 필요

※시행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제주시쓰레기매립장 내
- 사 업 량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운영 1식
 -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13년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평가 및 민간위탁금 정산 : 2014년 1~3월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4년 2월
- 위탁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4년 3월 ~ 2015. 2월

II-18.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 교육교사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교통안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 및 자원봉사자 활용 교육 실시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산 53-19번지의 1필지(4.3평화공원 맞은 편)
- 사 업 량 : 교통안전교육교사 실비보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어린이 20,000여명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반기별 설문조사 분석 후 발전적인 의견 적극 반영
- 홈페이지에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자료 제공
- 어린이 자전거 체험교육 실시로 안전한 자전거 생활문화 장착

II-19.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사업의 필요성

- 도내외 주요 도정 설명 및 각종 회의, 교육 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추진 상황 설명
- 제도개선 및 도의회 현안사항 보고 등 국회(중앙부처) 관계자 협의 시 추진 상황 설명자료 제작
- ※ 시행근거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관련 「제주특별법」 제177조 제2항

사업개요

- 건 명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 사 업 량 : 500부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 조세특례제한법 국회제출, 시행령·규칙 개정

○ 2014년 상반기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준비 확행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환급신청 접수창구 설치

- 환급상품·환급판매장 지정 등 제도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II-20. 교육용 컴퓨터 교체

사업의 필요성

○ 중앙무대의 수준 높은 공연을 경제적 부담 없이 향유하고 싶은 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 및 만족도 향상

○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여성과 도민의 문화역량 강화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선덕로 8길 12 (연동 324-10)

○ 사 업 량 : 여성과 도민이 행복한 문화공연 운영 1회(참여 예상인원 400명)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중앙의 우수 공연을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으로 운영

향후 추진계획

○ 중앙무대 활동 우수 공연을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으로 추진

○ 문화예술 소통 기회 제공으로 여성과 도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환경 조성

II-21.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학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 가능한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

- 농촌체험 학습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업의 가치확산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사업개요

- 건 명 : 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지역
- 사업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71,600천원(광특 35% : 도비 35% , 자부담 30%)

II-22. 농촌교육농장시범

사업의 필요성

- 농촌자원을 교과과정과 연계,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16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지역, 남원읍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80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제주지역 농촌여건에 맞는 교육농장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육농장주에 대한 교사양성 교육훈련 강화

II-23.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사업의 필요성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 육성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6,000천원(광특 35% 지방비 35% 자담 30%)
- 사업내용 : 농촌체험 교육 장비 및 자재 구입,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 농촌교육농장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II-24. 농기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의 필요성

- 2012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농가들의 요구에 의하여 농기계 임대장비 교육과 농기계임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농기계교육장 및 시설장비 유지로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업량 : 농기계 교육장시설장비, 냉난방기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1,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비수리를 신속하게 하여 농민서비스 강화

II-25.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

사업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 도모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농업기술센터
- 사 업 량 : 1,0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 실습재료 구입

향후 추진계획

- 지역활성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 확대추진 : 1,500명

II-26. 실전체험훈련장

사업의 필요성

- 민방위 상황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실전체험 교육강화로 정예 민방위대 육성
- 화생방, 응급처치, 전기·가스·교통안전 등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체험·실습 교육 강화

※ 시행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사업개요

- 건 명 : 실전체험훈련장 교관수당
- 사 업 량 : 실전체험훈련장 체험·실습교관(284명) 수당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8,4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30%, 지 7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민방위 실전체험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284회 운영

II-27.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사업의 필요성

- 제주시의 평생학습 도시조성 성과와 활동을 전국으로 홍보
- 전국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킹 구축 도모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 위 치 : 미정
- 사 업 량 : 홍보관운영,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사례발표, 무대공연등 참가
- 사업기간 : 2014년 2 ~ 2014년 11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7월 ~ 8월 : 축제참가에 따른 관련 업무추진
- 2014년 10월(예정) :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홍보관 운영

II-28. 제주도 평생학습대회 개최

사업의 필요성

-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결과물 발표를 위한 장 마련하고 전 시민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종합 평생학습대회 개최로 평생학습 진흥 및 발전에 기여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도 평생학습 대회 개최
- 위 치 : 제주도 사라봉동길 15 제주도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홍보관운영,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사례발표, 무대공연등 참가
- 사업기간 : 2014년 9월 ~ 2014년 11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9월 ~ 10월 : 계획수립 및 참가기관 모집
- 2014년 11월(예정) : 평생학습대회 개최

II-29.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사업의 필요성

- 평생학습관 환경개선 정비로 쾌적한 교육 환경 분위기 조성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3조

사업개요

- 건 명 :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업량 :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8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설 계 : 2014년 2월 ~ 3월
- 발 주 : 2014년 4월
- 공사기간 : 2014년 5월 ~ 8월

II-30.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의 교양, 오락 등 배움의 기회제공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로서 운영에 필요한 교육교재, 강사료, 졸업식 등 필요경비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 (노인대학 3개소, 대학원 1개소)
 - 제주시노인대학, 동부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 제주시노인대학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운영주체 :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 총사업비 : 140,000천원 (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종료후 정산검사 실시 및 2014년 운영계획에 의거 지원

II-31.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제공 및 문화·체험 활동 기회제공
-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전성장 도모
 - ※ 시행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용해로 55(용담2동) 성화청소년공부방 등 12개소
- 사업량 : 청소년공부방 12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0천원 (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와 연계 공교육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건전육성 도모

II-32.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사업의 필요성

-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의 사전예방점검 및 신속한 유지보수체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최적의 이용 환경 조성 및 최고의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 사 업 량 : 리사무소, 정보화교육장 PC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4년 2. 1 ~ 2015. 1. 31
- 총사업비 : 29,7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리사무소 및 정보화교육장 이용 환경 개선으로 최고의 정보서비스 제공

II-33.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정보 이용 생활화 유도 및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교육교재

사업개요

- 위 치 : 본청 열린정보센터 및 읍면 이동식 정보화교육장 등
- 사 업 량 : 어르신을 위한 쉬운 컴퓨터 활용, 한글2007, 엑셀2007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지역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교육 서비스 지원

II-34. 서진태영아파트 새마을문고 시설 및 도서구입

사업의 필요성

- 서진태영아파트 새마을문고의 시설노후 및 도서 등의 부족으로 새마을문고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바 시설 보강으로 쾌적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서진태영아파트 (고마로 19길 19)
- 사 업 량 : 시설 및 도서구입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0월 :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 및 보조금 교부

II-35.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컴퓨터 구입

사업의 필요성

-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강의용 컴퓨터 기기 노후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컴퓨터 기기 교체 요구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주민자치센터
- 사 업 량 : 컴퓨터 본체 10대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최신 컴퓨터기기 구입으로 주민자치센터 컴퓨터교실 수강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

II-36. 저소득층 문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 학습기회 확대 및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상 확립
- ※ 시행근거 : 도서관법 제32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사업개요

- 대 상 : 저소득 새마을문고 2개소(동홍6문고, 동홍3단지 희망문고)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새마을문고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 1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문고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1월 ~ 12월

II-37. 평생학습관 외부도색 정비공사

사업의 필요성

- 평생학습관의 외부도색이 탈색되어 도민과 교육수강생들로부터 불쾌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어 깨끗한 문화교육장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청결한 교육환경 제공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사업량 : 외부 도색 정비 2,600m²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4월
- 2014년 사업비 : 3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설계 및 발주 : 2014년 2월
- 공사 준공 : 2014년 4월

II-38. 평생학습관 대강당 구내방송시설 교체공사

사업의 필요성

- 1998년 개관 시 구입 시설된 대강당 구내 방송시설이 노후 되어 각종 행사 및 교육시 음향에 잡음이 발생하여 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 구내방송 시설을 교체 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구내방송시설 교체 1식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4월
- 2014년 사업비 : 1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설계 및 발주 : 2014년 2월
- 공사 준공 : 2014년 4월

II-39. 평생학습축제 지원(서귀포시)

사업의 필요성

- 지역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단체에게는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배우고 나누고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
-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통해 전국 평생학습기관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타 시도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 기회 제공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설치 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 권장)

사업개요

- 사 업 량 : 평생학습축제 개최 운영(2회)
- 사업기간 : 2014년 9월 ~ 11월
- 2014년 사업비 : 39,5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서귀포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 2014년 9월 ~ 10월(3~5일간 예정)
- 제3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2014년 9월 ~ 10월(예정)

II-40. 저소득층학생교육비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규신청·접수로 인하여 읍·면·동 업무부담 가중
- 읍·면·동 신청·접수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업무부담 경감
-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2조 제3항

사업개요

- 건 명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운영비
- 사 업 량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보조할 임시 인력 운영 경비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3월
- 2014년사업비 : 24,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치될 인력모집 및 업무 교육

II-41.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시설입소 노숙인에게 알콜 치료 및 자립지원, 재활치료를 통하여 사회 적응 및 사회복귀 도모
- ※ 시행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
- 내 용 : 알콜치료, 자활교육, 재활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노숙인 재활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II-42.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대 상 : 시지회 및 읍면 노인회
- 사 업 량 : 6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료, 간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및 수료식 경비지원 등
- 총사업비 : 138,000천원

II-43. 노인대학원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

사업개요

- 운영주체 :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강사료, 간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및 수료식 경비지원 등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노인대학원 1개소 운영비 지원 : 30,000천원

II-4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및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 ※ 시행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운영비(사무관리비)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 외 2개소
- 사 업 량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3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사업비 : 148,132천원(국비 74,066, 지방비 74,066)

향후 추진계획

-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전문선택·기본공통·특별지원과정, 토요체험활동 지원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II-4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운영비(공공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수송 차량 운영, 차량 수리 및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 관리 지원
- ※ 시행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관리 운영비(공공운영비)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 외 2개소
- 사 업 량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3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국비 12,500, 지방비 12,500)

향후 추진계획

-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운영지원으로 활성화 도모

II-46.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보조금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조례

사업개요

- 대 상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5개), 제주도농아복지관(1관)
- 선정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보조금 관리조례에 부합하는 시설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6,500천원
- 사업내용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5개)
 - 농아인들을 위한 “국어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주도농아 복지관 보조금 지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보조금 지원 : 2014년 2월
- 보조금 정산서 수합 및 검토 : 2014년 12월
-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규교육과정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 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I-47.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폭넓은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지원
 - ※ 시행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 21조
 -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0. 7. 13.)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 주민 및 학부모
- 선정기준 : 제주도내 지역 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5,800천원
- 사업내용
 - 평생교육프로그램 8강좌 및 평생학습 동아리 8팀, 각 30회 운영
 -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및 워크숍(도내 학교 및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 400명
 -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동아리 전시·발표회
 - 운영계획서 발간(1회 400부), 주요업무보고서(2회 200부), 요람발간(1회, 300부)

향후 추진계획

- 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속적인 축소 운영

II-48. 평생학습관 운영(서귀포학생문화원)

사업의 필요성

-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효과적인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통한 정서 함양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5절 제19조

사업개요

- 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 선정기준 : 희망자 선착순 접수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38,825천원
- 사업내용
 - 평생교실 프로그램 운영(6강좌)
 - 읍면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운영
 - 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관 운영 및 공연 참가(2회)
 - 나눔(동아리)교실 활동 지원(6개동아리)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2월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 서귀포시평생학습축제(9월), 제주평생학습축제(11월) 참가
- 2014년 3월 ~ 12월 나눔(동아리)교실 활동 지원

II-49. 평생학습관 운영(제주교육박물관)

사업의 필요성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주역주민을 위한 전통문화 교육
- ※ 시행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사업개요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 선정기준 : 참가 신청 희망자 중 선정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4,740천원
- 사업내용
 - 성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전통문화강좌, 전통예술교육, 제주역사문화교실, 우리고장문화유산답사 등
 - 학생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름방학 어린이 박물관 학교 운영, 유적지 및 박물관 속으로 빠져들기,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고3학생을 위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등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2월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2014년 3월 ~ 12월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재인식과 보존의식 고취

II-50. 평생학습관 운영(한수풀, 동녘)

사업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 평생학습관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사업개요

- 대 상 : 어린이, 학생 및 지역주민
- 선정기준 :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사운영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240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 제주평생학습축제 참여 및 운영
 -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지역 주민들의 자기계발 및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II-51. 평생학습관 운영(송악, 제남)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주민
- 선정기준 : 모집 홍보를 통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행사 운영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4,170천원(송악도서관 14,970천원, 제남도서관 19,200천원)
- 사업내용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주평생학습축제 참여 및 운영
 - 전국평생학습축제 참여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2014년 1월 ~ 12월
-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II-52.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일반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분위기 확대
- 평생교육 관계자의 자질 향상과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6조

사업개요

- 대 상 : 일반인, 평생교육관련 공무원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520천원
- 사업내용

-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여비
(평생교육관련 회의·연수·세미나·평생학습축제 등)
- 일반인 평생교육관련 행사 참가 여비(11명)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 : 연중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 2014년 10월
- 제주평생학습축제(제주교육문화축제)참가 : 2014년 11월
- 일반인에게 평생학습 기회 부여로 지역사회에 평생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기여

II-53. 평생교육 지원(서귀포학생문화원)

사업의 필요성

- 도서관, 야영수련장을 통합운영하고 있는 학생문화원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홍보 필요
 - 컴퓨터와 인터넷망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지원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장 제5절 제19조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학생문화원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9,100천원
- 사업내용
 - 평생교육운영계획서, 소식지, 리플릿 등 발간(4종)
 - 홍보동영상 유지관리
 - 평생교육 운영 비품 구입 : 컴퓨터본체(1대), 악기보관함(2대)
 - 전국평생학습 축제 등 각종 행사 참가
 - 전산장비 유지관리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4월 : 악기보관함 총 2대 제작
- 2014년 3월 ~ 4월 : 홍보동영상 유지 관리
- 2014년 1월 ~ 12월 : 평생교육운영계획서 등 발간 및 각종행사 참가

- 2014년 1월 ~ 12월 : 전산장비 관리
- 지역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으로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 지역평생학습관의 효과적인 홍보 및 평생학습운영의 전문성 함양
- 지역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II-54. 평생학습축제(평생학습 박람회)운영

사업의 필요성

- 평생학습 내용을 전시·발표·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이바지
- 제주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네트워크 형성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15호)
 -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0.7.13.)

사업개요

- 대 상 :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교, 주민, 평생교육봉사단
- 선정기준 :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선정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8,260천원
- 사업내용
 - 홍보체험관(체험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작품 전시) 운영
 - 동아리 경연대회(청소년동아리, 성인동아리, 어르신동아리) 참가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제9회(2014년) 제주평생학습축제 개최
- 제3회(2014년)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운영
- 평생학습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교육문화의 장 참여 기회 부여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의 의의를 제고하고 축제와 함께, 즐기는 학습문화 확산

제 3 장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Ⅲ-1.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올바른 나눔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나눔교육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도모
- ※ 시행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 및 제33조 (보조금 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비 : 22,30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2,300) *90% 보조사업
- 사업주체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
- 사업내용 : 희망나눔 교육사업 운영

향후 추진계획

- 행사에 따른 평가 실시 및 차년도 계획 수립

Ⅲ-2.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지원 및 학업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학업지속 및 자립의욕 고취
- 직장체험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 시행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93,867천원(기금135,707 , 지방비 58,160) 기금 70%/지방비 30%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내용 :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종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향후 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학업지속 및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립동기 강화 과정, 자립기술 습득과정 등 지속 운영

Ⅲ-3. 다문화가정 문화 역사 언어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다문화가족이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사회통합 유도
- ※ 시행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정 문화 역사 언어교육 운영
- 사 업 량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등 200명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문화 역사 언어교육,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Ⅲ-4.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결혼이민자의 재혼으로 인한 중도입국 자녀와 지역사회 및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교이탈 자녀에 대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자아 실현 및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비행 예방 문제 해소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
- ※ 시행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교육 운영

- 사업량 :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40명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체험 교육 및 통합교육 등 중도입국 및 학교이탈 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III-5. 제주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대상 제주화 교육실시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을 비롯하여 우리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제주도를 이해하고 제주도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환경 필요
- ※ 시행근거 :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대상 제주화 교육 실시
- 사업량
 - 제주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 500여명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제주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이 제주도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교육지원 및 환경조성 강화

Ⅲ-6. 갱년기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40~50대에 찾아오는 갱년기는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극복을 위한 주위의 관심 필요
- ※ 시행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갱년기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 1 ~ 12. 31
- 사업주체 : 교육기관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사업내용 : 갱년기 극복 취미·여가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 총사업비 : 60,000천원(도비)

Ⅲ-7.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리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다문화가정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소외지역 거주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집합 및 방문교육의 한계점 보완
- 언어 및 문화, 역사, 생활정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수강 기회 제공으로 지역사회 적응 지원
- ※ 시행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및 제16조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 운영 지원
- 사업량 : 175가구
 -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에 따른 인터넷 이용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언어 및 문화 생활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추진

III-8. 농어촌유학 지원 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경험 및 농촌 학생·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성 함양과 도농교류의 확대
- 농촌학교와 주민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교육 공동체 형성에 기여
 - ※ 시행근거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2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80,000천원(국비40,000 도비 40,00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농어촌유학센터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향후 추진계획

- 2014년도 농어촌유학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13년 11월
- 농어촌유학지원사업신청 : 2014년 3월 중(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유학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2014년 4월

Ⅲ-9. 외국인 선원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최근 도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지원을 통한 어선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건 명 : 외국인선원 교육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2월
- 사업자선정 : 2014년 3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2014년 3월
- 완료 및 정산 : 2014년 12월

Ⅲ-10. 품목별농업인 현장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도심 소비자들에게 제주의 청정 농·특산물 홍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회원들의 활동의욕 강화로 새로운 농업기술 조기전파에 기여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2조 2항

사업개요

- 건 명 :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연찬회 및 현장교육 지원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량 : 10회(품목별 단체)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0,000천원 (광특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새로운 농업정보 세미나 및 청정제주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활동 등

Ⅲ-11.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
- ※ 시행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사업량 : 1개소 (사업기관 선정, 위탁 시행)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100%)

Ⅲ-12.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감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 ※ 시행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

사업개요

- 위 치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사업량 : 청소년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 등 실시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에이즈 예방교육 : 30회
- 에이즈 예방홍보캠페인 : 1회

III-13.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최근 연안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선 원거리 조업 증가 추세로 어선 안전사고 자주 발생
- 조업 중 어선화재, 기상악화 및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어선사고 발생으로 어선 안전조업 체험 교육 필요
- ※ 시행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건 명 : 어선안전조업 체험 교육 지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 사업량 :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2월
- 사업자선정 : 2014년 3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2014년 3월
- 완료 및 정산 : 2014년 12월

III-14. 새농업기술강좌 및 농업현장 체험교육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농업기술습득 및 리더십 함양교육을 통한 소득안정과 농업인단체로서

의 자공심 고취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사업개요

- 건 명 : 새농업기술강좌 및 농업현장 체험교육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 사 업 량 : 10개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85,00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향후 추진계획

- 선진농업현장교육 및 청정 제주감귤 우수성 홍보활동 등
- 새로운 농업기술 조기도입 및 지역농업인에 보급

III-15.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사업의 필요성

- 무형문화재의 핵심 전승공간인 전수교육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와 무형문화재의 전승 역량 강화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지역 문화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의 확대
- ※ 사업시행근거 :
- 문화재보호법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제51조(보조금)

사업개요

- 건 명 : 갯전시관 시연행사, 제주농요 체험강습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체험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국비 5,000, 지방비 5,000)

향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2014년 1월 ~ 10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2014년 12월

Ⅲ-16.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사업의 필요성

-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잠재고객 확보
- 젊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진열 등 소비자 입장에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매출 증대
※ 시행근거 : 도민행복 민생시책 사업

사업개요

- 사업량 : 골목상권 살리기 체험 아카데미 1식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0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 2014년 2월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심사 및 선정 : 2014년 2월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 2014년 3월 ~

Ⅲ-17. 귀농귀촌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희망자에게 지역 선도농업인 연계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영농 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 동
- 사 업 량 :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3명(1인 최대 5개월 현장실습)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8,000천원(국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 현장실습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4년 2월

III-18.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귀농(희망)인-귀농 희망지역 기술보급전문가-전문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 농업기술+농업경영+창업까지 일관화 된 맞춤형 학습 실시
- 선도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의 농장에 입소하여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 과정을 전수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사 업 량 : 귀농귀촌교육 (3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1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2014년 11월

III-19.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사업의 필요성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등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 및 친환경적인 생활 유도

※ 시행근거 :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 자연 환경연수원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사업량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수행자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총사업비 : 221,400천원(국비 70%, 지방비 30%)

향후 추진계획

- 환경교육 참여학교 선정 및 교육수요 조사 : 2014년 1월
- 환경교육프로그램 확정 : 2014년 2월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사업 추진 : 2014년 3월 ~ 12월

III-20. 유소년체육 육성

사업의 필요성

- 어린이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현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4월 ~ 10월
- 주최/주관 : 제주시생활체육회/종목별연합회
- 참여인원 : 연인원 50,000명
- 총사업비 : 50,000천원(보조율 : 정액)

○ 주요내용

- 점차 줄어드는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입시위주의 어린이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들어 주고자 함
- 축구, 농구 등 국민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을 보는 체육의 한계를 벗어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III-2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다른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낮은 수준으로 학령기 학습 능력 저하 등 학교가족생활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으로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시행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중앙로 265 6층(이도이동, 성우빌딩) 제주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 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 언어발달 지도사 : 3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8,059천원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분기 1회

III-2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특별활동 등 종합적인 공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 ※ 시행근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등 4개소
- 사 업 량 : 방과후아카데미 4개소 (직영 3개소·위탁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676,135천원(국비 47.5%, 지방비 47.5%, 도비 5%)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 및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성장 도모

III-23.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 도모
- ※ 시행근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제주시청소년수련관 내
- 사 업 량 :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운영인력 : 5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244천원

향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III-24. 경로당순회교육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로당별 순회교육 관련 경비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사업개요

- 사업량 : 275개소 경로당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운영방법 : 년1회 (경로당별 순회방문)
- 사업내용 :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총사업비 : 18,000천원 (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경비 지원
- 경로당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III-25. 노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의 교양, 오락 등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 47조(비용의 보조) 및 시행령 제 24조(비용의 보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영락 경로대학 등 15개소 노인교실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운영 프로그램 : 일반교양, 건강강좌, 지역경제, 시사상식, 취미생활 등
- 운영방법 : 주 1회 이상 / 1일 2시간
- 총사업비 : 60,000 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노인교실 운영 수요조사 및 상반기 운영비 지원
- 2014년 6월 : 하반기 수요조사 및 운영비 지원

III-26.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사업개요

- 사업량 : 65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1,400여명
- 수행기관 : 제주시니어클럽 등 4개기관
- 사업내용 : 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2,811,35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기관 공모
- 2014년 2월 :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실시
- 2014년 하반기 : 사업수행 평가 실시 등

III-27. 토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건전한 토요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추진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별빛누리공원
- 사업량 : 학교 밖 창의교실 토요 교육과정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2월 :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3 ~ 12월 : 토요교육 프로그램 운영

III-28. 제7기 한수풀 해녀학교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인 제주해녀를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제주해녀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생활문화를 전수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주해녀를 테마로한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건 명 : 제7기 한수풀해녀학교운영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4107
- 사 업 량 : 해녀양성교육 실시(외국인, 도외거주자, 도민 대상)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
- 총사업비 : 22,30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2,3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중 : 제7기 한수풀 해녀학교 및 해녀체험장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4월 ~ 10월 : 입학생 모집 및 해녀체험장 운영

III-29.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하고 차별화된 방과 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꿈과 희망의 명품교육도시 육성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관내 초·중·고교 70개 학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87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교육특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2014년 11월
- 2014년 교육특화 프로그램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014년 12월

III-30.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청소년들에게 토론 교육 및 실습 경험 제공으로 비판적, 논리적, 창의적 사고 훈련 및 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중학생
- 사업기간 : 방학 중 4일
- 총사업비 : 15,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2014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2월

III-31. 소외계층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소년과 우수 대학생을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별적 학업활동 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및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중학교
- 사업기간 : 2014년 4월 ~ 11월
- 2014년 사업비 : 2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학습지도, 진로 및 고충상담 등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평가 : 2013년 12월
- 2014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2월

Ⅲ-32.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새로운 교육환경에 발맞춰 긍정적인 자기탐색을 통해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배양
- 스스로 생각하고 비전을 설계하여, 자기주도성 및 창의·인성을 함양한 21세기 신(新) 인재 양성

사업개요

- 대 상 :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
- 사업기간 : 방학 중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자기이해 및 적성탐색, 자기주도학습법, 개별상담 및 코칭 등

향후 추진계획

- 2014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2월

Ⅲ-33. 여성능력개발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글로벌 시대에 맞춘 여성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0조 및 제14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7개 분야/ 72개 과목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127,18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평생학습관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2014년 12월
- 2014년 우수 여성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11월 ~ 12월

III-34.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사회활동 및 자활의지가 강한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 시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사업개요

- 대 상 :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사 업 량 : 22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기준 : 1인당 500천원 범위 내
- 2014년 사업비 : 11,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자격취득 교육비 수시 지원

III-35. 노인교실 운영비

사업의 필요성

-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 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시행근거 : 노인복지자체사업지원지침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교실 3개소
- 사업량 : 3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주1회 3시간)
- 사업내용 : 9과목(한글, 한문, 컴퓨터, 건강체조, 민요, 시조, 무용 등)운영
- 지원기준 : 개소 당 월400,000원
- 총사업비 : 14,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노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대상 발굴

III-36.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사업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 ※ 시행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사업개요

- 건 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55번길 2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량 : 이중언어강사 2명(중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484천원(기금 22,739, 지방비 9,745)

향후 추진계획

- 언어영재교실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III-37.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외 5개소
- 사 업 량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6개소(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문화의집 4)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2,000천원(기금 6,000, 지방비 6,000)

향후 추진계획

- 단기성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내실화 된 운영비 지원

III-39.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문화의집 주5일 수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외 6개소
- 사 업 량 : 청소년문화의집 7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운용을 위해 청소년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III-4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
※ 시행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인건비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7-1 외 2개소
- 사업량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 9명 (PM 3, SM 6)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1,228천원(국비 92,098, 지방비 92,098, 도비 17,032)

향후 추진계획

- 방과후 아카데미 3개소 운영인력 9명(PM 3명, SM 6명) 배치 지원

III-41.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도내 중·고등 학생에게 멘토(대학생)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 지도 등을 담당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2-14호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교육부 학부모지원과 - 3095, 2011. 7. 29.)

사업개요

- 대 상 : 중 26교(멘토 162명), 고 12교(멘토 83명)
- 추진기간 : 2014년 3월 ~ 2015. 2월
- 총사업비 : 132,640천원
- 사업내용
- 멘토링 운영을 희망하는 중·고등학교별로 멘토(대학생)를 선발하여 멘토링(교과학습·특기적성·인성지도, 개별상담 등)을 운영
- 주 2회(회당 2시간), 4주 활동에 따른 멘토 수당 및 교통비 지원

향후 추진계획

- 운영 계획 수립 및 멘토 수 배정 : 2014년 4월
- 운영 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14년 8월, 2015. 1월
-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도모

III-4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필요성

- 방과후학교 담당자 및 외부강사 연수를 강화하여 방과후학교 질 제고
-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운영 강화
- 대학교와의 교류 협정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활성화 추진
 -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2-14호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교육부 학부모지원과 - 3095, 2011. 7. 29.)

사업개요

- 대 상 : 도교육청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2,150천원
- 사업내용
 -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1회) 및 외부강사 연수(1회)
 -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 홍보를 위한 자료집 발간(250부)
 -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 길라잡이 발간(300부)
 -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도내대학과의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3개대학)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및 컨설팅 활동 여부

향후 추진계획

- 3개 대학과의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 추진 : 2014년 3월
- 업무담당자 및 외부강사 연수 : 2014년 1월, 6월
- 우수사례집 제작·보급 : 2014년 12월
- 방과후학교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도모

III-43.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보호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2-14호
- 2013학년도 초등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선정결과 및 세부 추진계획 (교육부 학부모지원과-693, 2013. 2. 1.)

사업개요

- 대 상 : 초등 110교
- 추진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총사업비 : 4,373,000천원
- 사업내용
 - 오후돌봄(방과후~17시) 운영 : 110교(135교실)
 - 저녁돌봄(17시~22시) 운영 : 12교(13교실)

추진계획

-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2014년 3월
- 운영 성과 분석 및 예산집행 현황 점검 : 2014년 12월
- 초등방과후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 공교육 신뢰도 증가

제 4 장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IV-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 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 시행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저소득층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90,000천원(국비 95,000 도비 95,000)
-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 공모를 통해 심사 후 선정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및 평가 워크숍 추진
- 지원사업자별 컨설팅 및 간담회 추진
- 2014년 사업자 공모, 심사, 선정
- 2014년 사업 추진

IV-2.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내 초중등을 대상으로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제주어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 업 량 :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제주어 보전·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IV-3.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국악전문인력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학교 음악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 및 국악 전공자들이 교육현장 참여기회 제공
- ※ 시행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지침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
- 사업량 : 초·중·고 85개교 교과과목 및 특별과목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1,760천원(국비 120,880 도비 120,880)
- 주 관 : 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향후 추진계획

- 2014 사업주관 단체 선정(문화부) 및 2014 대상학교선정(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강사선발 및 강사 연수

IV-4.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성교육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예방 교육 강화 필요
- ※ 사업시행근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대상)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지원
- 사업계획 : 14개 초등학교 · 30,000천원(지방비 30,000)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추진계획

- 성폭력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로 사전예방 및 성 관련 인지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IV-5.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부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하는 부모 증가
 - 결혼으로 인한 부부역할, 부모역할, 육아 실습 등 교육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조성
- ※ 시행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사업개요

- 건 명 :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결혼 초부터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육아를 위한 지식 습득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IV-6.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의 필요성

-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 제고

※ 사업시행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개요

- 건 명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사 업 량 : 3,500명
 - 사업주체 :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위탁기관)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6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1월
- 전문교육기관과 민간위탁 체결 : 2014년 2월
- 자동제세동기 설치시설 등 도민대상 교육 실시 : 2014년 3월 ~ 12월

IV-7.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비

사업의 필요성

- 직접 국난의 어려움을 이겨낸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등을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교육실시

사업개요

- 건 명 :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비
- 사업량 : 초·중·고등학생 대상 강의 100회(월 10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국 100%)

향후 추진계획

- 나라사랑특강 실시 : 연 100회 실시(매월 10개교 내외)

IV-8. 노동법률 교육 및 무료법률상담활동

사업의 필요성

- 노조간부로서의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전한 조합운영에 기여
-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직장인의 필수교양을 교육함으로써 향후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 33,000천원(도비 30,000, 자부담 3,000)
- 주요내용
 - 노동법률 교육 및 전문계고 예비직장인 교육
 - 도민과 노동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활동 등

향후 추진계획

- 노사 법률교육 추진 : 도민 및 도내 전문계고교 학생
- 사업계획신청 접수 / 교부 : 2014년 2월 / 2014년 3월

IV-9.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사업의 필요성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착한소비자 발굴·육성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유도 및 미래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 ※ 시행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

사업개요

- 사업량 :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1식(10개학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사업주관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추진계획 수립 : 2014년 2월
- 2014년 사회적기업 공감체험학교 신청접수 : 2014년 3월~
- 사업수행 : 2014년 4월 ~11월

IV-10. 협동조합 아카데미 개최 사업비

사업의 필요성

- 협동조합의 본질과 취지의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지원
- 협동조합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증대를 통한 협동조합의 경영 기반 확립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협동조합
- 사업량 :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1식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6월
- 주요내용 : 도내 협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

- 협동조합 교육을 통한 제주지역의 협동조합가 양성 : 연중
-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통한 협동조합의 인식확산 : 연 중

IV-11. 고령자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고령자 인구수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 필요
- ※ 시행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사업개요

- 위 치 : 도 일원
- 대 상 : 고령자
- 사 업 량 : 2개소(48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국비 5,000, 도비 5,0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도 고령자 정보화 집합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4년 1월
- 2014년도 사업공고,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 2014년 2월
- 2014년도 고령자 정보화 집합교육 사업 추진 : 2014년 3월 ~ 12월

IV-12.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식생활의 서구화, 산업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따른 식문화 변화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정과 외식가정 증가 실정
-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습관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올바른 식문화 정착 필요
- ※시행근거 :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 사업량 :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7,000천원(국비26,000, 도비11,000)
 - 부담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사업내용 : 식생활 교육,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학교 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2014년 1월
- 참여 학교 등 모집 공고 및 선정 : 2014년 2월 ~ 3월
- 사업 시행 : 2014년 4월 ~ 12월

IV-13. 수산업 경영인 및 자율관리공동체 교육훈련

사업의 필요성

- 어촌수산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어업인(수산업경영인 등)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
- ※ 시행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사업량 : 수산업경영인 신규 교육 및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비 : 12,000천원(광특)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어업인 후계자 교육훈련 실시 : 2014년 6월
- 수산업 경영인 및 자율관리공동체 선진수산시설 견학

IV-14. 수산질병 방역교육

사업의 필요성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 질병 방역에 관한 교육 실시(*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 질병관리 능력 함양 및 위생 의식 제고를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시행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8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위탁기관) :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 교육대상 : 도내 양식어업인 및 종사자(400여명)
- 교육일정 : 2014년 3월 ~ 5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향후 추진계획

-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2014년 추진계획서 제출 : 2014년 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2014년 3 ~ 5월

IV-15. 농촌관광 경영자과정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관광과 농업을 전목시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체험지도사 양성
-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통하여 농촌 관광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농촌관광의 전문경영인 양성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1개소 5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천원 (광특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소양과 능력을 갖춘 농촌체험지도사 양성으로 농촌관광 질적 성장을 통한 농촌관광(마을,농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촌자원 가치 상승
- 제주 관광을 농업, 농촌의 새로운 영역 개발로 향후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

IV-16. 귀농귀촌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 및 동법 제7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 업 량 : 귀농교육과정 운영(2과정)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2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농산물건조가공 상품 포장개선을 위한 인력 지원 및 상품화 추진
- 농산물가공지원실 확대 개방운영으로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

IV-17. 바우처 교육비(제주시)

사업의 필요성

- 특별자치·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민간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특성화된 우수한 전문교육 이수
- 교육 수요자의 교육훈련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의 성과창출 극대화

사업개요

- 건 명 : 바우처 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민간교육기관의 우수 교육과정을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여 이수토록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IV-18. 바우처 교육(서귀포시)

사업의 필요성

- 특별자치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민간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특성화된 우수한 전문교육 이수
- 교육 수요자의 교육훈련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조직의 성과창출 극대화

사업개요

- 건 명 : 바우처 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민간교육기관의 우수 교육과정을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여 이수토록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IV-19.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지도자들에게 능력개발

의 기회 제공

- 새로운 국내외 정보를 습득하여 지역사회 발전 방향을 이끌어 나갈 선도그룹 육성

사업개요

- 교육위탁 : 제주대학교(행정대학원)
- 교육인원 : 60명 내외
 - 대 상 : 만 20세 이상 도내 거주 도민
 - 운 영 : 1년 과정(주 2회·4시간, 30주× 2강좌)으로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를 선도할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기회 제공
- 지역사회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강화와 도정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IV-20. 탐라의 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탐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론과 현장 체험연계 교육실시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역사교육 홍보 정예화
- 탐라국 역사인식 제고에 대한 창조 융합적 방식 접목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교육인원 : 40명 내외
- 사업기간 : 2014년 5월 ~ 10월(월 1회 총 6회기)
- 총사업비 : 17,4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지도자로서 제주역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도정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할 수 있는 제주 역사·문화 교육 추진

IV-21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상설 교육장을 활용한 자격취득 및 취업지원 정보화교육으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도민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 도민들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 운영으로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개요

- 교육장소 : 舊 방송통신대(제주시 삼도2동) 및 읍·면·동 지역
- 사업량 : 도민정보센터 50회·1,070명, 찾아가는 교육 20회·240명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121,1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현장과 도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무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IV-22. 도민사회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긍정적인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핵심 지역리더 및 지역 활성화 교육 추진을 통한
- 도민들에게 시대적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계층별, 직능별 일터 및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테마교육 필요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① 1차산업과 연계한 도민교육 추진
 - 신규어업인, 도시직장인 야간귀농 교육 등 운영
 - ②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친절교육 추진
 - 운수업체종사자, 관광통역안내사, 농어촌 민박사업자 교육 운영

- ③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
 - 골프 경기보조원 및 종사자 양성과정, 문화관광 및 자연유산해설사 과정
- ④ 수요자 중심 제주역사문화 이해과정 운영
 - 탐라의 얼 아카데미, 제주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주문화이해과정
- ⑤ 찾아가는 도민교육 운영 방식 개선 추진
 - 읍·면·동 실정에 맞게 교육일정 및 인원을 조정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1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현장과 도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무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구축

IV-23.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의 필요성

- 도민욕구를 반영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으로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지원,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도민의 인문역량 강화 등 평생학습 활성화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0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평생교육기관(단체) 대상 공모사업으로 추진
- 공모분야
 - 학습·고용연계, 성인문자해득, 소외계층지원, 직업능력개발, 인문교양, 학습공동체 만들기,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도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발적·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육성

IV-24. 중국어 사이버학습 강좌 보강사업

사업의 필요성

- 중국인관광객 급증세에 따라 도민과 공무원 대상 중국어 사이버학습 강좌를 보강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의콘텐츠 구축
- ※ 교육 수요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상시학습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건 명 : 중국어 사이버학습 강좌 보강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 사이버강좌 학습콘텐츠 보강(1석)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콘텐츠를 보강하여 외국어학습 흥미 유발 및 관심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외국어학습 분위기 조성
- 중국관광객 급증시점에서 도민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IV-25.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기반 구축을 위해 도민의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 및 국제화 마인드 고취

사업개요

- 건 명 : 수준별 맞춤형 도민 외국어 위탁교육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도민 외국어아카데미 운영(영어·일본어)
※ 중국어교육은 별도계획 추진
- 총사업비 : 10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3 도민외국어아카데미 성과평가 실시 2014년 교육계획에 반영
- 도민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회화과정 교육 중점 추진

IV-26.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

-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도전지역 안전농산물 생산지역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희망농가에 대한 친환경농법, 친환경농자재 사용법 교육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민간교육기관
- 사업량 : 4개 기관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000천원 (도비 30,000 기타 13,000)

향후 추진계획

-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도모

IV-27.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및 행사 참가 보상

사업의 필요성

- 마을에서 다양한 분야의 마을만들기 전문가 컨설팅을 요구하는 추세
- 전문가 또한 부분적, 개별적 참여로 마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적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및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필요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사업개요

- 건 명 : 마을지원 전문가 교육 및 행사참가보상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량 : 전문가 협력단 48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마을지원 전문가 협력단 운영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마을지원 전문가 협력단 워크숍 개최(월1회) : 2014년 2월 ~ 11월
- 마을지원 전문가 협력단 운영 결과보고 및 평가 : 2014년 12월

IV-28. 평화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지속적인 평화교육으로 제주도민의 자질향상과 선진화된 의식함양
- 평화에 대한 의식변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세계 평화의 섬 개념정립 및 평화 문화 정착을 통한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 ※ 시행근거 : 세계평화의섬범도민회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 서귀포시지역 주관단체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참 여 : 제주시 + 서귀포시지역 주민 1,400여명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강좌 계획수립 및 업무협약 : 2014년 1월 ~ 2월
- 2014년 평화아카데미 개강 및 추진 : 2014년 3월 ~ 12월

IV-29. 자연생태 홍보 전시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곳자왓오름의 중요성 및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보전관리 의식 고취

사업개요

- 위치 및 사업량
 - 시설위탁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곳자왓생태체험관(조천읍 교래리)
 - 오름 조사 및 DB 구축 2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비 : 400,000천원(광특 200,000 지방비 200,000)

향후 추진계획

- 곳자왓 생태체험관 전시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민 및 학생등 10,000명 교육, 전문 곳자왓 생태해설사 양성 등
- 오름 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IV-30.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통한 도민 역량 강화교육을 통한 생활속의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 실천기반 조성
- 특화된 기후변화 교육 모델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 완성
 - ※ 시행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사업개요

- 건 명 : 기후변화 교육 지원
- 사 업 량 : 기후변화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업비 : 4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향후 추진계획

- 2013년도 기후변화 대응교육 위탁사업 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014년 1월
- 기후변화 대응 교육 운영 추진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4년 1~12월

IV-31. 시청각(e-러닝) 교육

사업의 필요성

- 도서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민 및 공무원 집합교육 시 유능강사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 적정과정 강의시 활용
- 교육 예산절감을 물론 우수 강사 강의를 손쉽게 청취

사업개요

- 건 명 : 시청각(e-러닝) 교육
- 방 법 : 검증된 초빙강사 강의내용을 촬영하여 집합교육 등에 활용
- 사 업 량 : 1,000천원 × 10회=1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년 연중
- 총사업비 : 10,000천원 (도비)

향후 추진계획

- 2014년도 시범운영하고 이를 분석하여 확대 등 검토

IV-32.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도민의 예술감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타시도 미술관과의 차별성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 건 명 : 미술관 문화아카데미 운영
- 위 치 : 제주시 1100로 2894-78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74,200천원
- 내 용
 - ① 미술관 대학 : 2월 ~ 10월
 - 미술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의 미술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좌 진행
 - ② 어린이 미술학교 : 3월 ~ 11월(토, 일)
 - 미술에 이론과 실기 병용학습을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
 - ③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 연 6회 예정
 - 어린이 및 읍면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미술수업
 - ④ 스케치 여행 운영 : 연 4회 예정
 -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장소들을 미술가와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야외 스케치
 - ⑤ 시민미술 실기강좌 운영 : 연 2강좌 예정
 - 일반인 대상의 미술실기(수채화, 아크릴화 등) 수업
 - ⑥ 미술관 체험행사
 - 어린이날, 개관기념, 전시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 ⑦ 소외계층 문화나눔 프로그램 : 1 ~ 12월
 - 보육원, 양로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미술관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향후 추진계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13. 12월 ~ 2014년 2월
-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자료조사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IV-33.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와 호국안보의지 확산을 위하여 각 지역, 대상별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 실시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

사업개요

- 사업량 : 연중수시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1월 (50회내)
- 총사업비 : 10,000천원(지10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 50회

IV-34. 문화교육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문화교육 운영으로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 및 예술교육 욕구 충족
 - 아마추어 예술인 육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 및 창조적 생활문화 활성화
 -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교육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업량 : 24개 과정 · 1,2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금5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신화이야기, 인문학 특강, 아빠요리 등 운영 : 6개과정, 175명
- 여성들의 문화예술 잠재역량 개발 및 감성적 끼를 발휘할 수 있는 2014 문화교육 연간계획 수립 : 12월중

IV-35. 탐라문화아카데미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제주 탐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굴함으로서 제주 전통문화전승보급을 위한 탐라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사회교육과정 개설 운영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사업개요

- 운영주체 : 탐라종묘문화재단
- 위 치 : 제주시 아라 1동 2459-1(탐라문화회관)
- 사업량 : 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IV-36. 녹색생활 실천 전문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우리지역이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었지만 주변자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
- 자생식물 등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화 연계방안 모색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사업개요

- 건 명 : 녹색생활 실천 전문교육
- 위 치 : 애월읍, 조천읍, 시내동지역
- 사업량 : 2회 100명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9,000천원(도비 100%)

향후 추진계획

-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자원과 농업을 활용한 녹색실천 교육으로 도심의 녹색화 및 도시민 농심 심어주기 추진

IV-37. 귀농귀촌교육 현장 실습지원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자 및 귀농희망자에게 지역 선도농업인 연계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 선도농업인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조건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생 등
 - ※ 시행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할지역내
- 사 업 량 : 귀농 영농현장 실습지원 3명(1인 최대 5개월 현장실습)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4,00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1월
- 사업추진 및 완료 : 2014년 11월

IV-38.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

사업의 필요성

- 영어교육도시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 및 동북아 교육허브로 조성
-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로 '21년까지 영어교육도시 완성

사업개요

- 대 상 : 외국 초·중·고등 교육기관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국제학교 유치활동 전개
 - 유치목표 : 추가로 국제학교 4개교 유치(총 7개교)
 - 유치기간 : 2014년 ~2021년
 - ※ 2016년 미국 「세인트존스베리 제주」 개교 예정
- 외국교육기관 유치활동 전개
 - 유치목표 : 5개 단과대학·학생 1천명 규모
 - 유치기간 : 2014년 ~2021년

IV-39.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추진

사업의 필요성

-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 행동양식의 생활화교육을 위해 우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선정·지원
 - ※ 시행근거 :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환경부)

사업개요

- 사업량 : 13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71,430천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청소년, 도민 대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 보조금 교부 : 2014년 3월

- 환경 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2014년 3월 ~ 12월

IV-40.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관련자료 제공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실천하기 위한 환경교육 관련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사업개요

- 사업량 : 환경교육 책자 등 환경정보지 제공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제공대상 : 도내 184개 학교(초·중·고)

향후 추진계획

- 환경교육교재 개발 등에 따른 자료 수집 : 2014년 3월
- 환경교육 관련자료 제공 : 2014년 5월

IV-41.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위탁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절, 청결을 체계화한 교육운영으로 오고,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
-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교육 및 평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체계 교육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성 있는 교육 실시

사업개요

- 사업량 : 친절모니터링 2회 및 친절클리닉 100회
- 사업기간 : 2014년 4. 1 ~ 2014년 10. 31
- 총사업비 : 3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상·하반기 친절 모니터링 실시 : 반기 1회(연2회)
- 관광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클리닉 운영(100회)

IV-42. 안보교육

사업의 필요성

- 북한정세와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등 안보교육으로 올바른 국가관 확립
- 새터민, 통일·안보 전문가 등 우수강사 위촉하여 민방위대 안보교육 강화
※ 시행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개요

- 건 명 : 안보교육 강사수당
- 사 업 량 : 민방위대 안보교육 강사(76명) 수당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1,447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 : 국 30%, 지 70%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민방위 안보교육 전문강사 위촉 및 교육·훈련 76여회 운영

IV-43. 열린시민교육

사업의 필요성

- 다양한 평생학습강좌 실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교육 기회 제공으로 가정생활의 활력 증대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열린시민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몸살림스트레칭, 자연염색 등 13개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공고, 프로그램 운영
- 주 5회 / 10:00 ~ 12:00

IV-44. 전통공예과정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의 특성화를 살린 평생학습 강좌 운영
-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시행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업개요

- 건 명 : 전통공예과정교육 강사수당
- 위 치 :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제주시 평생학습관
- 사 업 량 : 갈천을 이용한 공예품제작, 제주야생화·꽃차 제조과정등 5개 강좌 운영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2월 : 강좌개설 및 모집공고,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4월 강좌 종료 후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평생교육진흥원) 신청

IV-45. 문화플랫폼사업

사업의 필요성

-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의 창조성과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예술가 파견 교육
- 지역내 전문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 및 자긍심 부여
 - ※ 시행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사업개요

- 사업량 : 문화예술단체 20개단체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1월 : 운영단체 지정 및 동아리 공모
- 2014년 2월 ~12월 : 사업 시행

IV-46.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제주 삼양동유적만의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선사문화의 체험 및 학습장 역할뿐만 아니라 복원된 문화재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활기 넘치는 선사문화 관광지 조성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삼양1동 제주 삼양동 유적
- 사업량 : 삼양 선사문화 체험 1식
- 사업기간 : 2014년 7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2월 : 사업운영 계획(안) 수립
- 2014년 3월 : 시행업체 선정 및 민간위탁 계약체결

IV-47. 청소년 승마 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자라나는 청소년의 승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승마산업 활성화 기여 및 이용성 제고
 - 학교 학습 연계를 통한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협동심 함양 및 건강증진 도모
- ※ 시행근거 :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 승마적응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말 관련 단체 및 승마장
- 참여대상 : 제주시 관내 중·고등학생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00천원(도비 10,000, 자부담 4,300)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승마운동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학교생활 적응 및 말과 친근감 형성 유도로 올바른 정신 함양 배양

IV-48.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제주시민 승마인구 저변확대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승마인구 수요창출 및 승마기반 조성으로 말 이벤트 유치 확대
- ※ 시행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시민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말 관련단체 및 승마장
- 참여대상 : 18세 이상 남·여(제주시민)
- 사업량 : 1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300천원(도비 10,000, 자부담 4,300)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민 승마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승마 인구 저변확대 및 관광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IV-49. 읍면지역정보화교육

사업의 필요성

- 정보화교육장 접근이 다소 어려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과정 및 장소(시간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학습 기회 제공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읍면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
- 사업량 :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활용 등 시민이 원하는 과정운영
- ※ 지원 : 교재, 강사(필요시 PC, 빔 등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 교육기간 : 2월(주 3회)
- 총사업비 : 18,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읍면 지역 주민의 눈높이 맞춤 교육 및 불편사항 수시 청취 해결

IV-50. 친절리모델링 현장코칭 교육

사업의 필요성

- 고객만족(CS)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친절의 습관 체질화 도모로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사업개요

- 건 명 : 친절리모델링 현장코칭 교육
- 사 업 량 : 친절교육 1식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11,000천원 (도비)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전문기관의 지속·반복적인 현장코칭으로 친절의 습관화
- 친절행정의 강화로 시민에게는 만족을, 직원에게는 자아발전 기회 제공

IV-51. 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국제자유도시 시민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강화
-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기개발 극대화
- ※ 시행근거 :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광양중 2로 25(이도1동 1664-7)
- 사 업 량 : 11개 분야 교육 프로그램(평일교육10개분야,주말교육1개분야)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4,56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3년도 교육프로그램 성과물 작품전시회 행사
- 일 시 : 2013.12. 6 ~ 12. 8(예정)

- 장 소 :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다목적실
- 작품수 : 100여점(사군자, 수채화, 서예, 사진)
- 2013년도 3/4분기 교육프로그램 수료 : 2013. 12. 14, 334명

IV-52. 정보화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육성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필요
- 공무원의 행정업무 및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화능력 향상
 - ※ 시행근거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조례 제23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정보화교육장(마을정보사랑방 15개소, 정보화마을 8개소 등)
- 교육대상 : 지역주민 1,000명
- 교육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32,5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실용정보화교육 강화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로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기회 확대

IV-53. 귀농귀촌 정착 교육 사업

사업의 필요성

- 귀농귀촌인 대상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 마인드 함양 및 정착률 제고
 - ※ 시행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사업개요

- 건 명 : 귀농귀촌 정착 교육 사업
- 사업대상 : 2009. 1. 1일 이 후 서귀포시 귀농귀촌인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2014년 사업비 : 72,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귀농귀촌 교육 창업연계과정 : 4개 과정, 100명 수료 예정

IV-54. 제주올레 아카데미운영

사업의 필요성

- 제주올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올레 관광객 유치

사업개요

- 건 명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사 업 량 :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연3회)
- 사업기간 : 2014년 4월, 8월, 11월
- 총사업비: 11,200천원(도비 10,000 차부담 1,200)

향후 추진계획

- 2014 제주올레 아카데미 운영 : 연3회(2014년 4월, 8월, 10월)

IV-55.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의 필요성

- 생태마을의 자연생태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태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및 생태교육 활성화
- ※ 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제42조(생태마을 지정 등)

사업개요

- 위 치 : 자연생태우수마을
(무릉2리, 마라리, 수망리, 신례1리, 수산2리, 감산리, 예래생태마을)
- 사업량 : 체험프로그램 각 1식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 15,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보조금 신청 및 검토 : 2014년 1월
- 보조금 교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14년 2월 ~ 12월

IV-56.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급속한 사회변화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기회 제공
-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0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평생학습관
- 사업량 : 5개분야 / 42개 과목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2월
- 총사업비 : 74,440천원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014년 1월
-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2014년 1월 ~ 12월
- 매월 교육 수료 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IV-57.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학생들의 흥미, 소질, 적성, 학업능력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 효과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관내 초·중·고교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수요 조사 : 2014년 1월

IV-58. 충효-한문교실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방학기간 중 경로당에서 지역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한문 및 전통예절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선도 및 전통미풍 양속 계승
- ※ 시행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제47조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경로당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 사업내용 : 관내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 및 한문 교육
- 지원기준 : 개소 당 년 1,000천원 (상·하반기 각 500천원)
- 총사업비 : 15,000천원

IV-59.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

사업의 필요성

-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개요

- 건 명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위 치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외 6
- 사 업 량 : 청소년문화의집 7개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천원(기금 7,000, 지방비 7,000)

향후 추진계획

- 단기성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청소년의 욕구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내실화 된 운영비 지원

IV-60. 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창업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창업아이템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평가로 성공창업 유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청년창업 아카데미 개설(3회), 창업 심화반 운영(2회)
- 총사업비: 25,0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청년창업 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 : 2014년 1월
-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및 심화반 개설 : 연 중(총 5회)

IV-61.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

사업의 필요성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용 창출을 증대하기 위함

※ 시행근거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
- 사업량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교육 2회
- 총사업비: 12,500천원(도비)

향후 추진계획

-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3월 ~ 12월

IV-62. 승마 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필요성

- 말산업을 친환경 녹색 고부가산업으로 육성하고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 인구 저변확대

※ 시행근거 :

- 축산법 제3조
- 말산업육성법 제19조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시행단체 : 국민생활체육 서귀포시승마연합회
- 사업량 : 3개반(초·중·고급반 운영), 월 8회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31,500천원(도비 22,000, 자담 9,500)

- 사업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승마기본훈련 및 이론교육, 승마지도 및 조련, 마필 사양관리, 승마대회 출전경비 등

향후 추진계획

- 승마대중화로 승마레저문화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승마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서귀포시를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집중 육성

IV-6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평생교육지원

사업의 필요성

- 외국인(중국인) 관광객 급증 및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일반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을 시킴으로써 외국인관광객 응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광통역 전문가 양성과정 및 중국어 심화반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동홍동 관내에 위치한 녹지그룹과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개요

- 위 치 : 동홍동주민센터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천원

향후 추진계획

- 2013년 11월 ~ 12월 : 지역주민 대상 수요조사 실시
- 2014년 1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014년 2월 ~ 11월 : 교육 실시

IV-6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총액배분사업)

배경 및 필요성

-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장의 역할 수행

사업개요

- 대 상 : 20교(고 2교, 중 8교, 초 10교)
- 선정기준 : 공립 각 학교급별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선정
- 추진기간 : 2014년 3. ~ 2015. 2.
- 총사업비 : 60,000천원
- 사업내용
 - 평생교육활성화학교로 선정된 20개교에 대하여 교당 3,000천원 지원

추진계획

-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20교) : 2014년 3월
- 전·후반기 운영 실적 수합·분석 및 현황 점검 : 2014년 7월, 12월

IV-65. 성인 문자해득교육 운영

배경 및 필요성

- 정규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 인정
-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개요

- 대 상 : 민간인
- 추진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15,044천원
- 사업내용
 -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및 여비
 - 문자해득프로그램관련 각종 회의 참가여비
 - 문자해득프로그램지정기관 지도감독 출장여비
 - 문자해득프로그램지정기관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

- 2014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 2014년 3월
- 2014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을 위한 학력심사위원회 회의 개최(3회)

IV-66.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사업의 필요성

- 퇴직전문 인력을 활용한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시행근거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계획(2002. 01. 21.)

사업개요

- 대 상 : 지역사회 퇴직 전문인력 70여명
- 선정기준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원 선발계획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88,760천원
- 사업내용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활동비 지급(70명, 10월) : 72,000천원
 - 학습동아리 조직·운영(7개팀, 70명) : 1,470천원
 - 지역문화연수(1회) 및 연찬회(2회) : 9,700천원
 - 각종 활동지원 운영(12월) : 6,135천원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 27개 기관에서 70여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부
부

【부록 1】

평생교육법

[시행 2014년1.28] [법률 제12339호, 2014년1.2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년1.28>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9의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12.30]

[시행일 : 2014년7.1] 제19조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년1.28>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년1.28>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년1.28]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년7.1] 제23조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5.22>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

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시행일 : 2014년7.1] 제32조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 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시행일 : 2014년7.1] 제33조

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4년7.1] 제38조의2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14년1.28>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년1.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년1.28>

[제목개정 2014년1.28]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년1.28>

[제목개정 2014년1.28]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 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 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시행일 : 2014년7.1] 제42조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5.22>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제목개정 2013.5.22]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년1.28>

[시행일 : 2015.1.29] 제45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 : 2014년7.1] 제46조

부칙 <제12339호, 2014년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09-03-18 조례 제 459호
(일부개정) 2011-08-17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12-10-17 조례 제 943호
(일부개정) 2013-05-15 조례 제 1031호

관리책임부서 : 인재개발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제16조·제21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7>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3조(위원)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7.>

③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8.17, 2012.10.1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7>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10.1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4.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0.17.>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 문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제11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0.17.,2013.5.15.>

1.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6.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7. 학습계좌제 운영
8.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9.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해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0.17.>

⑤ 도지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조직 및 시설 등의 지정자격과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17.>

-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되거나 지정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0.17.>
- ⑦ 도지사는 진흥원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제11조의2(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1조의3(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7.]

제12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
 -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③ 평생학습관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시에 평생학습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중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8.17>]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8.17]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토요일
 2. 평생학습관의 소독,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6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7조(사용료 등)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일 및 교육 개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7]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이동복지법」에 따른 이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의 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및 그 가족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한 후 감면승인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1. 시설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2. 교육신청자가 교육 수강일 전에 교육취소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1.8.17]

- 제20조(보육서비스)** 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11.8.17>]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15 (건입동 5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 (서귀동 321-10번지)	

<별표 2>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7조 관련)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금 액	비 고
강 당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2시간 이내	25,000	
강의실 등	회의, 교육, 세미나 등	2시간 이내	15,000	

※ 2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교육 과정별	1명 / 1월	10,000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보육위탁료(제20조 관련)

□ 보육위탁료

구 분	금 액	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	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	12,000원	

※ 적용기준

1.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위촉위원용)

청렴서약서(제3조제3항 관련)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협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협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총괄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공동 참여	고용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담당
	고성철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주무관
	송미영	제주시 평생학습 담당
	오영란	서귀포시 평생학습 담당
	허경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과장
간사	고연주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

2013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실행계획

발행인 강 승 화
 발행일 2014년 1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690-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26
 전화) 064-710-7432 팩스) 064-710-7439
 홈페이지 : www.edu.jeju.kr
